

기독교 신앙과 실정법에서 본 낙태와 안락사 *

송 삼 용 **

【차례】 -----

- | | |
|---|---|
| <ul style="list-style-type: none"> I. 서 론 II. 낙태와 안락사의 일반적 고찰 <ul style="list-style-type: none"> 1. 낙태에 대해 2. 안락사에 대해 III. 태아의 생명권과 안락사에 대한 실정법적 논의 <ul style="list-style-type: none"> 1. 태아의 생명권 2. 안락사에 대한 실정법적 논의 IV. 인간 생명에 대한 신앙적 검토 <ul style="list-style-type: none"> 1. 인간 생명의 개념 2. 인간 생명의 시작점 V. 안락사에 대한 신앙적 논의 <ul style="list-style-type: none"> 1. 성경이 말하는 죽음의 개념 2. 죄의 결과로써의 죽음 3. 그리스도인의 죽음의 의미 4. 안락사와 연명치료에 대한 신앙 | <ul style="list-style-type: none"> 적 검토 5. 신앙적 검토에 따른 대안 VI. 결론 및 제안 <ul style="list-style-type: none"> 1. 낙태에 대한 대체 입법이 속히 나와야 한다. 2. 낙태의 문제에 대한 접근 방식을 수정해야 한다. 3. 생명의 존엄성과 고귀함을 확산시켜 나가야 한다. 4. 안락사는 생명의 존엄성과 가치를 축으로 삼아 접근할 필요가 있다. 5. 생명에 대한 심층적인 연구가 지속되어야 한다. 6. 책임있는 생명윤리 인식과 확산이 절실하다. |
|---|---|

I. 서 론

한국생명존중희망재단에서 발표한 통계에 따르면, 2022년 1월부터 8월까지 8,426명이 자살했다. 지난 2021년 한 해 동안 13,352명이 목숨을 끊었다.¹⁾ 통계청은 2021년 한국의 자살률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중 1위며, 30대까지의 사망 원인 1위가 자살이라고 발표했다.²⁾ 이미 알려진 사실이지만 막상 통계를 접하고 보니 충격적이다. 지난 해 8월 한 달 사이에 1046명이 스스로 생명을 끊었다는 것은 우리 사회에서 벌어지고 있는 생명경시 풍조를 보여주는 단면이다.

인간의 생명이 그렇게 자살로 마감해야 할 만큼 가볍고 하찮은 존재일까? 그렇다면 우리 사회가 OECD국가 중 자살률 1위라는 불명예스러운 통계를 줄여 보려는 특단의 대책을 마련할 수 없을까? 인간 생명의 가치를 가장 소중히 여기고 있는 기독교라도 우리 사회에 그처럼

* 이 글은 한국교회법학회 제30회 학술세미나 “생명윤리와 기독교(2022.11.24.)”에서 발표한 내용을 정리한 것임.

** 하늘양식교회 담임목사, 광신대칼빈대 겸임교수, 크리스천포커스·교회법신문 발행인, 고려대 법학박사 과정

1) 한국생명존중희망재단, 한국자살현황 <https://kfsp-datazoom.org/korea04.do>.
2022. 11. 13. 최종 검색.

2) 프레시안, 2022. 9. 27. <https://www.pressian.com/pages/articles/2022092713574355237> 2022. 11. 13. 최종 검색.

만연된 생명경시 풍조에 역류·역행하는 패러다임을 기반으로 한 구체적인 대안을 내 을 수 없을까? 이같은 물음에 대해 기독교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은 바 된 인간의 존엄성과 고귀한 생명의 가치를 제대로 가르쳐야 할 의무를 다하지 못하고, 사회 전반에 확산시켜야 할 책임을 감당하지 못한데 대한 반성적 성찰이 절실해 진다.

우리 사회가 직면한 생명과 관련한 문제는 자살에 대한 절망적인 통계만이 아니다. 생명윤리의 쟁점인 낙태와 안락사 역시 천하보다 귀한 인간 생명의 존엄성과 가치를 치명적으로 해(害)하는 주제들이다. 과학 기술의 진보는 스스로 자제력을 통제하는 자율성³⁾을 잃은 채 무제한적으로 연구 분야 및 그 범위를 확산해 가고 있다. 현대 생명과학의 주제들이 그 단면을 보여 주고 있다. 예컨대, 배아 복제, 유전자 조작 및 치료, 연명 치료, 인간대상 및 인체 유래물 연구, 장기이식 놔사 등이 그 사례들이다.

이 같은 생명 윤리의 쟁점들 중 낙태의 경우 헌법재판소가 「형법 제269조 제1항 등 위헌소원」에서 헌법불합치 결정⁴⁾을 내림으로써 낙태죄가 폐지되어 2020년 한 해 동안 인공임신중절 건수가 32,063건으로 집계되었다.⁵⁾ 이 같은 공식 통계 외에도 우리 사회에서 그 동안 낙태가 광범위하고도 은밀하게 시행된 암수범죄⁶⁾까지 포함하면 낙태로 인한 태아의 살해는 그보다 훨씬 많을 것으로 추정된다. 안락사의 경우도 「연명의료결정법」에 근거하여 환자의 연명의료결정제도를 시행하고 있어 사회적 논란이 이어지고 있다.

이처럼 낙태와 안락사의 문제는 현대 사회에서는 더 이상 피해갈 수 없는 주요 이슈 중의 하나다. 이 두 쟁점은 삶과 죽음의 문제로써 모든 사람들이 겪어야 할 필연적 과제이며, 동시에 인간 생명의 존엄성과 가치에 관련된 보편적인 주제들이다. 특히 두 쟁점들은 윤리적인 측면이나 종교적인 면, 더 나아가 사회적인 합의를 도출해야 할 과제도 안고 있다. 위와 같은 사회 현실을 고려하면서 본고는 실정법의 차원에서 낙태와 안락사의 문제를 고찰해 보고, 인간의 생명과 죽음의 문제를 기독교 신앙의 관점에서 검토한 후 낙태와 안락사로 인하여 빚어진 현실적인 과제들을 어떻게 대처해야 할지 파악해 보고자 한다.

II. 낙태와 안락사의 일반적 고찰

3) 청년의사, 2003. 06. 23. “생명윤리에 대한 국내외 논쟁”,

<http://www.docdocdoc.co.kr/news/articleView.html?idxno=30661>, 2022. 11. 13. 최종 검색.

4) 헌법재판소 2019. 4. 11. 선고 2017헌바127, 전원합의체 결정.; 헌법재판소는 형법 조항 (제269조 1 항, 270조 1항)의 위헌 여부에 대해 한 산부인과의사가 신청한 헌법소원·위헌법률심판제청 사건에서 재판관 4명(헌법불합치), 3명(단순위헌), 2명(합헌) 의견으로 헌법불합치 결정을 선고했다. 현재는 당시 결정에서 2020년 12월31일까지 국회에서 법을 개정하도록 주문하였다.

5)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이 만15~49세 여성 8,500명 대상으로 온라인 조사한 후 “인공임신중절 실태조사 (2021년) 주요결과”를 발표한 자료에서 만15세~44세 여성인구 1,000명 인공임신중절건 수 통계의 추이는 다음과 같다: ('05년) 29.8%(342,433건) → ('10년) 15.8%(168,738건) → ('16년) 6.9%(69,609건) → ('17년) 4.8%(49,764 건) → ('18년) 2.3%(23,175건) → ('19년) 2.7%(26,985건) → ('20년) 3.3%(32,063건)..

<https://www.kihasa.re.kr/news/press/view?seq=47320>, 2022. 11. 15. 최종 검색.

6) ‘암수범죄’(暗數犯罪)란 범죄가 발생했으나, 수사기관에 의해 인지되지 않았거나 인지되었더라도 증거 불충분 등으로 검거하지 못한 범죄를 뜻한다. 즉, 범죄의 공식 통계상에 잡히지 않는 숨겨진 범죄를 의미한다.. 나무위키, ‘암수범죄’ <https://namu.wiki/w/%EC%95%94%EC%88%98%EB%B2%94%EC%A3%84>, 2022. 11. 15. 최종 검색.

1. 낙태에 대해

(1) 낙태의 개념

‘낙태’ (abortion)⁷⁾란 자연적인 분만기 이전에 태아를 모체 밖으로 인위적으로 배출하는 행위를 말하며, ‘낙태죄’는 태아를 자연분만기에 앞서서 인위적으로 모체 밖으로 배출시키거나 모체 안에서 살해하는 행위를 내용으로 하는 범죄를 의미한다.⁸⁾ 형법상 낙태의 개념에 대한 해석은 “임신중절에 의하여 태아를 살해하는 것” 만이 낙태라고 보는 협의설과 “자연적 분만기에 앞서 인위적으로 태아를 모체 밖으로 배출하거나 모체 안에서 살해하는 것”이라고 보는 광의설이 대립하지만⁹⁾ 통설과 판례¹⁰⁾는 광의설이 타당하다고 본다.¹¹⁾ 이처럼 형법상 낙태의 죄가 규정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현실적으로 처벌되는 사례가 매우 드물었다.¹²⁾

(2) 보호법의

낙태죄의 보호법의은 태아의 생명¹³⁾으로 보는 견해와 태아의 생명과 신체의 안전¹⁴⁾라

7) 헌법재판소는 2012년 8월 낙태죄 합헌결정(2012. 8. 23. 2010헌바402)을 내린 후 7년만인 2019년 4월, 낙태를 한 여성이나 이를 시행한 의사를 처벌하는 형법 조항이 헌법에 불합치하다고 선고했다. 그 결과 개선입법 시한인 2020년 12월 31일을 넘김으로써 자기낙태죄(제269조)와 의사낙태죄(제270조)는 무효가 되었다. 그런 상황에서 정부의 개정안 및 그 외 여러 개정안들이 나왔으나 회기 만료로 인해 모두 자동 폐기된 상태다. 참고로 폐기된 정부개정안을 보면, 임신 14주까지는 낙태 전면허용, 14-24주 낙태 조건부 허용, 25주 이상은 전면 금지하는 구도로 제270조의2(낙태의 허용요건)을 신설하였다., 배종대, 『형법각론』, 서울: 흥문사, 2021, 103면.: 본 장에서는 헌법불합치 결정 이전의 낙태죄 규정을 중심으로 원론적 개념을 고찰할 것이다.

8) 대법원은 낙태의 의의에 대해 다음과 같이 설시하였다.: 낙태라 함은 태아를 자연분만 시기에 앞서서 인위적으로 모체 밖으로 배출하거나 모체 안에서 살해하는 행위를 말하며, 낙태죄는 이와 같은 낙태를 내용으로 하는 범죄로써, 낙태 결과 태아가 사망하였는지 여부는 낙태죄의 성립에 영향이 없다., 대법원 2005. 4. 15. 선고 2003도2780 판결.

9) 김성돈, 『형법각론』, 서울: 성균관대학교출판부(SKKUP), 2021, 122면.

10) 참조, 대법원 2005. 4. 15. 선고 2003도2780 판결.

11) 정화성, “생명윤리문화에 있어서 낙태에 대한 소고”, 「문화미디어엔터테인먼트법」 제12권 제2호 (2018.12.), 147면.: 판례에 의하면, “낙태는 태아가 생존 가능한 시점에서의 인공적인 태아 배출 행위도 포함한다는 점에서 모자보건법이 규정하고 있는 인공임신중절수술보다는 넓은 개념이 된다.”(현재 2019. 4. 11. 선고 2017헌바127 결정).

12) 2010년부터 2020년까지 10년 동안 인공임신중절(낙태) 수술의 90% 이상이 불법 시술되고 있는 가운데 낙태죄로 기소 및 처벌된 사례는 10여건에 불과해 현행 낙태죄에 대한 무용론이 나오고 있는 실정이다. 국회에서 보건복지부·법무부·대법원의 자료를 근거로 한 보고에 따르면, 낙태 현황(추정 규모) 및 낙태죄 관련 처벌에 따르면 2017년 기준 전체 낙태 수술 추정 규모는 49,764건으로, 이중 합법적 수술은 4,113건으로 낙태 수술의 약 90%가 불법으로 이뤄지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또한 2010~2020년 8월까지 10년 동안 검찰의 낙태죄 기소 건수는 연 평균 9.4건으로 약식기소율이 높았으며, 2019년부터는 모두 불기소 처리된 것으로 드러났다. 더 나아가 법원 1심 기준으로 10년 동안 낙태죄 관련 판결 125건을 살펴본 결과 징역형이 선고된 건수는 7건, 벌금형은 14건에 그쳤고, 나머지는 선고 유예(45.6%), 집행유예(28.8%)를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일보(2020. 10. 27.), 2022. 9. 12. 최종 방문 <https://www.hankookilbo.com/News/Read/A2020102714140001768>,

13) 배종대, 『형법각론』, 서울: 흥문사, 2021, 104면.; 이재상, 『형법각론』, 서울: 박영사, 2013, 86면.; 김일수·서보학, 『새로쓴 형법각론』, 서울: 박영사, 2018, 35면.; 김선복, 『신형법각론』, 서울: 세종출판사, 2016, 96면.; 박상기, 『형법각론』, 서울: 박영사, 2011, 77면.; 김성돈, 앞의 책, 122면

14) 오영근, 『형법각론』, 서울: 박영사, 2022, 80면.; 정영일, 『형법각론』, 서울: 도서출판 학림, 2022,

고 보는 견해가 대립된다. 부수적 보호법익으로는 ① 임부의 생명과 신체의 안전이라고 보는 견해¹⁵⁾, ② 임부의 신체라고 파악하는 견해¹⁶⁾, ③ 임부의 생명과 신체라고 하는 견해¹⁷⁾ 등이 대립된다. 뿐만 아니라 낙태 금지 유형에 따라 보호법익을 달리 해석하는 견해로써, 자기낙태와 동의낙태죄는 태아의 생명만이 보호법익이 된다고 보며, 그 외 다른 낙태죄는 임부의 생명·신체가 부차적인 보호법익이 된다고 보는 견해가 있다.¹⁸⁾ 이같은 견해들 중에서 보호법익을 인간의 존엄과 가치 존중의 측면에서 태아의 생명을 형법적으로 보호해야 할 법익으로 보는 견해가 주목을 끈다.¹⁹⁾ 더 나아가 낙태 문제를 태아와 임부의 문제에 국한하지 않고 인권의 차원에서 여성의 권리 측면을 강조하는 입장도 눈에 띈다.²⁰⁾

2. 안락사에 대해

(1) 안락사의 개념

‘안락사’ (euthanasia)란 헬라어 ‘euthanatos’에 기원한다. 이는 ‘eu’ (좋은, 아름답게, 행복하게)와 ‘thanatos’ (죽음)의 합성어로 어원적으로는 ‘아름답고 존엄한 죽음’, ‘행복하고 품위있는 죽음’, ‘고통이 없는 빠른 죽음’, ‘잠자는 것과 같은 평안한 죽음’, ‘깨끗한 죽음’, ‘가벼운 죽음’ 등을 의미한다.²¹⁾ 각 사전들은 좀더 정확하고 분명하게 안락사의 개념을 정의한다. 예를 들면, 「옥스퍼드 영어사전」 (Oxford English Dictionary)은 안락사를 “조용하고 편안한 죽음을 야기시키는 행위”라고 정의하며, 「웹스터 새 국제사전」 (New International Dictionary)은 안락사란 “치유될 수 없는 상황이나 질병으로 커다란 고통이나 어려움을 안고 있는 사람을 아무런 고통을 주지 않고 죽여주는 행위나 관행”²²⁾이라고 한다. 여기에서 안락사는 죽음에 이르는 과정에서 인위성이 개입된다는 것이 가장 큰 특징이다. 이는 본래 그 시각에 죽지 않아도 될 생명을 죽게 한다는 것이며, 이것이 안락사의 본질이라 할 수 있다.²³⁾

57면.: 정성민·박광민, 『형법각론』, 서울: 삼영사, 2011, 89면.

15) 오영근, 위의 책, 80면.; 김일수·서보학, 앞의 책, 35면.; 배종대, 위의 책, 104면.; 김성돈, 앞의 책, 123면.; 정성민·박광민, 위의 책, 89면.

16) 이재상, 앞의 책, 86면.

17) 박상기, 앞의 책, 77면.; 정영일, 앞의 책, 58면.

18) 김성돈, 앞의 책, 123면.; 반면 자기낙태죄와 단순동의낙태죄 및 업무상 동의낙태죄, 부동의낙태죄에 서는 태아의 생명을 주된 보호법익으로 보지만, 임부의 의사결정의 자유를 부차적인 보호법익으로 보는 견해가 있으며, 낙태치사상죄는 태아의 생명을 주된 보호법익으로 하지만 임부의 생명·신체의 완전성을 부차적인 보호법익으로 보는 견해도 있다(김일수·서보학, 앞의 책, 135면.)

19) 김일수·서보학, 위의 책.; 배종대, 앞의 책, 104면.

20) 이준일, 『인권법, 사회적 이슈와 인권』, 서울: 홍문사, 2021, 532면.

21) 김상득, 『생명의료 윤리학』, 서울: 철학과현실사, 2000, 292면.

22) 김상득, 위의 책.

23) 백수원, “죽음, 안락사, 생애마무리에 관한 헌법적 논의 -‘생애마무리 지원 법안’에 관한 내용을 중심으로-”, 「미국헌법연구」 제30권 제3호(2019), 88면.; 안락사의 개념은 학자들마다 약간씩 견해의 차이를 보인다: “생존의 가능성이 없는 환자의 고통을 덜어주기 위하여 인위적으로 죽음에 이르게 하는 일”(김학성·최희수, 『헌법학원론』, 서울: 피앤씨미디어, 2022, 413면.); “어떤 사람이 가능한 한 편안한 수단을 이용하여 다른 사람을 죽이려는 의도에서 파생된 죽음”(김상득, 위의 책.); “불치병에 걸린 말기 환자가 겪게 되는 극심한 고통을 제거하는 수단으로 당사자가 죽음을 원할 때 죽도록 도와주는 행위”(이준일, 『13가지 죽음 어느 법학자의 죽음에 관한 사유』, 서울: 지식프레임, 2008, 59면.); “합리주의적 발상에 지지되어 인간 생명의 불가역적인 죽음의 방향에서 인식되었을 때 이를 인위적으로

(2) 안락사, 존엄사, 연명치료의 구분

의학계에서는 소극적 안락사를 존엄적 안락사의 의미로도 사용하며, 일반적으로 소극적 안락사²⁴⁾를 존엄사로 이해하기도 한다. 하지만 일부 학자들은 안락사와 존엄사는 개념이 전혀 다르기 때문에 구분해야 한다는 입장이다.²⁵⁾ 학자들에 의하면, 안락사란 질병에 의한 자연적인 죽음보다 훨씬 이전에 생명을 마감시키며, 질병에 의한 죽음이 아니라 인위적인 행위에 의한 죽음을 의미한다. 반면 존엄사는 말 그대로 품위 있는 죽음을 의미하며, 인간적 삶을 살 수 있도록 최선의 의학적인 치료를 다했음에도 돌이킬 수 없는 죽음이 임박했을 때 의학적으로 무의미한 ‘연명치료’²⁶⁾를 중단함으로써 질병에 의한 자연적인 죽음을 받아들인다. 일부 학자들은 안락사와 존엄사의 의미가 전혀 다른데, 우리나라에서는 존엄사와 안락사를 혼용해서 거론하다보니 일반인들에게 많은 혼선을 일으켰음으로 안락사와 존엄사를 구분해야 한다고 장한다.²⁷⁾

III. 태아의 생명권과 안락사에 대한 실정법적 논의

우리 헌법 제10조에는 인간의 존엄과 가치 및 행복 추구권을 보장하고 있다. 이는 인간의 존엄성을 헌법 최고의 가치로 규정함과 동시에 인간은 다른 목적을 위한 어떤 수단이 될 수 없음을 천명하는 것이다. 이와 같은 헌법 규정에 따라 인간의 존엄성과 인격적 가치를 침해하거나 인간성을 부정하는 행위는 금지된다.²⁸⁾ 여기에서 인간의 존엄과 가치 존중의 측면에서 낙태죄의 보호법적으로 본 태아의 생명권에 대한 논의는 필수적

로 단축시키려는 인간의 행위”(문국진, 『생명윤리와 안락사』, 서울: 여문각, 1999, 301면).: “중환자나 불치 또는 빈사의 병사에 대해서 쉬운 죽음을 가능케 하는 인간의 행위”(김일수, “안락사 문제의 실정법적 연구”, 「현대사회」 현대사회연구소(1984), 177면).: “환자의 감내할 수 없고 치료와 조절이 불가능한 고통을 없애기 위한 목적으로, 환자 본인 이외의 사람이 환자에게 죽음을 초래할 물질(약물)을 투여하는 등의, 인위적 적극적인 방법으로 자연적인 사망, 자연사 시기보다 앞서 환자를 사망에 이르게 하는 행위”(김건열, 『존엄사』, 서울: 최신의학사, 2005., 93-94면).: “인간 생명이 불가역적인 죽음의 방향에서 인식되었을 때 합리주의적인 발상에 의해 이를 인위적으로 단축시켜 죽음에 이르게 하는 인간 행위”(이동익, “가톨릭 윤리신학의 안락사 이해와 불필요한 치료행위에 관한 고찰”, 「신학과 사상」 제35집(2001), 1면) 등.

24) 윤영호, “품위있는 죽음(존엄사)을 위한 법적 제도적 장치 마련”, 「의료와 법」 제6권 제3호(2008), 103면, ‘소극적 안락사’란 생명 유지에 필수적인 치료, 영양공급, 약물 투여 등을 중단함으로써 환자의 생명을 단축하는 행위를 말한다.

25) 염창환 교수(강남성모병원 완화의학과)는 한겨레와 가진 인터뷰에서 “존엄사와 안락사는 개념이 전혀 다르다”면서 “존엄사는 환자와 가족을 위해서도 도입되어야 할 제도로 인위적인 기계호흡을 통해 무작정 생명을 연장하는 것은 병원, 환자, 가족 모두에게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한겨레신문, 2009.5. 21. “뇌사-식물인간, 존엄사-안락사 차이는”, <https://www.hani.co.kr/arti/society/health/356079.html>, 2022.11. 29. 최종 검색.

26) 「호스피스·완화의료 및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결정에 관한 법률」(약칭: 연명의료결정법) 제2조에 의하면 ‘연명의료’란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에게 하는 심폐소생술, 혈액 투석, 항암제 투여, 인공호흡기 작용 및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의학적 시술로써 치료효과 없이 임종과정의 기간만을 연장하는 것을 말한다.

27) 김건열, 앞의 책.: 저자에 의하면, 존엄사는 “말기의 불치병 환자에게 연명치료를 유보 또는 중단함으로서 초래되는 죽음, 즉 자연사의 임종 과정”을 의미한다.

28) 류병운, “인간복제를 규제하는 국제규범”, 「홍익법학」 제15권 제1호(2014), 809-810면.

이다. 낙태에 있어서 법적 문제가 되는 본질적인 부분이 태아의 생명권이 박탈되는데 있기 때문이다.

1. 태아의 생명권

(1) 헌법적 근거

낙태와 관련된 태아 혹은 사람의 생명권에 대한 헌법적 근거는 무엇인가? 헌법에는 생명권에 대한 명시적인 규정은 없다. 판례의 입장 역시 “선험적이고 자연법적 권리, 즉 인권이라는 이유”²⁹⁾로 헌법적인 근거를 제시하지 않고 있다.³⁰⁾ 다만 일부 헌법학자들은 생명권의 근거를 인간의 존엄과 가치 혹은 행복 추구권, 신체의 자유 등에서 찾을 수 있다고 보며,³¹⁾ 그 헌법적 근거에 대해서는 헌법학자들마다 미세한 견해의 차이를 보이고 있다. 일반적으로 생명권에 대한 헌법적인 근거는 다음 4가지로 정리해 볼 수 있다: ① 제10조 제1문 전단의 인간의 존엄과 가치, ② 행복추구권을 포함한 제10조 제1문 후단, ③ 제12조 제1항의 신체의 자유, ④ 제37조 제1항의 열거되지 않은 기본권 등.³²⁾

(2) 헌법재판소의 입장

헌법재판소는 태아의 생명권과 관련하여 4차례의 결정을 내렸다. 2008년에는 생명권을 명문 규정의 유무와는 관계없이 당연히 인정되는 헌법상의 권리로써 모든 기본권 중의 기본권으로 봄과 동시에 모체와는 별개로 “형성 중인 생명”인 태아는 생명권의 주체

29) 이준일, 『헌법학강의』, 서울: 흥문사, 2019, 441면.; 헌법재판소 2008. 7. 31. 선고 2004헌바81 전원합의체 결정.

30) 계희열 교수에 의하면, 생명권의 중요성 및 생명권과 관련된 각국의 헌법상 규정에 대해 “인간의 생명은 세상의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가장 고귀한 것으로써 생명에 대한 권리라는 너무나 당연한 것”이기 때문에 근대 헌법은 이를 명문화할 필요가 없었다., 계희열, 『헌법학(중)』, 서울: 박영사, 2002, 251면.; 미국 헌법은 수정 제5조와 수정 제14조에서 생명권을 규정하고 있다., 김철수, 『인간의 권리』, 서울: 산지니, 2021, 381면.

31) 계희열 교수는 “우리 헌법은 존엄성을 가진 인간존재의 기초적인 법적 전제로서 생명권을 보호하고 있다”고 본다., 계희열, 위의 책.; 정화성 교수는 “인간의 존엄과 가치에서 파생되는 권리로서 생명권”을 주장한다., 정화성, “생명윤리문화에 있어서 낙태에 대한 소고”, 「문화 미디어 엔터테인먼트법」 제12권 제2호(2018. 12.), 153면.

32) 이준일, 앞의 책, 2019, 440-441면.; 이같은 견해에 따라 생명권에 대한 헌법적 근거들에 대해서 헌법학자들의 견해가 대립된다: ① 인간의 존엄과 가치를 규정하고 있는 헌법 제10조에서 그 근거를 찾는 견해(김철수, 『헌법학신론』, 서울: 박영사, 2013, 431면.); ② 제37조 제1항에서 열거되지 않는 자유와 권리의 보호를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제37조 제1항을 그 근거로 보는 견해(계희열, 앞의 책, 252면.); 장영수, 『헌법학』, 서울: 흥문사, 2021, 602면.); ③ 제10조, 제12조 제1항, 그리고 제37조 제1항 세 규정에서 근거를 찾는 견해(권영성, 『헌법학원론』, 서울: 법문사, 2011, 410면.); 정종섭, 『헌법학원론』, 서울: 박영사, 2022, 496면.); ④ 헌법 제10조 및 인간의 신체의 안전과 자유를 규정한 헌법 제12조 제1항에서 근거를 찾는 견해(성낙인, 『헌법학』, 서울: 법문사, 2022, 1209면.); ⑥ ‘생명권’은 ‘신체의 자유’의 당연한 전제일 뿐 아니라 인간의 존엄성을 그 가치적인 핵으로 하는 기본권 질서의 논리적 기초임으로 명문규정의 유무에 관계없이 당연한 헌법상의 권리로 인정된다고 보는 견해(허영, 『한국헌법론』, 서울: 박영사, 2022, 382면.); ⑦ 헌법 제12조의 신체의 자유와 함께 인간의 존엄성을 실현하기 위하여 필수적인 기본 조건을 보호하는 기본권이라고 보는 견해(한수웅, 『헌법학』, 서울: 법문사, 2021, 620면.); ⑧ 열거되지 않은 개별적 기본권에 해당되기 때문에 헌법 제37조 1항이 직접적인 근거가 되며 제10조 제1문 전단과 후단은 생명권의 내용을 보완하는 간접적인 근거가 된다는 견해(이준일, 앞의 책, 2019, 441면) 등.

가 될 수 있으며, 국가는 헌법 제10조에 따라 태아의 생명을 보호할 의무가 있다고 봤다.³³⁾ 2010년에는 앞의 결정(2008년)의 취지를 따르면서도 체외에서 냉동 보관된 ‘초기 배아(수정후 착상 전 또는 원시선이 나타나기 전의 배아)는 생명권의 주체가 될 수 없다’는 입장을 보였다.³⁴⁾ 형법상 낙태죄의 합헌성을 인정하였던 2012년에는 태아는 모체와는 별개의 생명체이며, 생명권의 주체라는 점을 분명히 했다.³⁵⁾ 그 후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던 2019년에는 태아도 헌법상 생명권의 주체가 되며, 국가는 헌법 제10조 제2문에 따라 태아의 생명을 보호할 의무가 있다고 판시하였다.³⁶⁾ 이처럼 태아의 생명권은 헌법에 명시된 규정은 없을지라도 헌법적 근거는 분명하다. 헌법재판소 역시 태아의 생명권을 인정하고 있다. 그렇다면 태아 생명의 시작점은 언제인지의 여부가 낙태 문제의 실마리를 풀 수 있는 단서가 될 수 있다.

(3) 태아 생명의 시작점

태아 생명의 시작점에 대한 문제를 검토함에 있어서 전제적인 조건은 태아에게 인간의 존엄과 가치 및 생명권을 인정하는 것이다. 이 전제적인 조건은 앞선 헌법적 근거 및 판례의 태도 등에 따라 도출된 바이다. 그런데 문제가 되는 부분은 2010년 판례에서 보인 “초기배아는 생명권의 주체가 될 수 없다”³⁷⁾는 입장이다. 그렇다면 태아의 생명권이 인간의 생명과 동일하게 파악할 수 있는 것인지의 여부가 정리되어야 한다. 특히 생명권이 임신중단의 허용으로 인해 제한될 수 있는지의 여부에 대해 검토해야 한다. 엄밀히 따지면 태아가 그런 권리를 갖는 인간인지에 대한 명시적인 규정을 헌법에서 찾을 수 없기 때문에 배아나 생식세포에 대해서 그 권리의 인정 여부에 대한 논란도 예상된다. 더 나아가 법학계에서 시도해 온 인간의 존엄과 가치 등의 논의나 생명권을 보장하는 보호법의 주체가 출생한 후의 인간이었기 때문에 인간 곧 생명의 시작점에 대한 논의는 필수적이다.

1) 생명의 시기

생명의 시작은 어디인가³⁸⁾라는 물음에 대한 발생학자들의 연구 결과는 생물학계 및 의학계에서 일반적인 견해로 내놓은 수정 후 2주가 지난 시점보다 더 정밀한 검토를 요하게 된다. 여기에서 인간 생명의 시작을 수정 시로 볼 것인지, 착상 시부터로 볼 것인지 등의 견해로 나뉜다.³⁹⁾

(가) 수정시설

33) 헌법재판소 2008. 7. 31. 선고 2004헌바81 결정. “모든 인간은 헌법상 생명권의 주체가 되며, 형성 중의 생명인 태아에게도 생명에 대한 권리가 인정되어야 한다.”

34) 헌법재판소 2010. 5. 27. 선고 2005헌마346 결정.: 참고, 이준일, 앞의 책, 2019, 442면.

35) 헌법재판소 2012. 8. 23. 선고 2010헌바402 전원재판부 결정.

36) 헌법재판소 2019. 4. 11 선고 2017헌바127 결정.

37) 헌법재판소 2010. 5. 27. 선고 2005헌마346 결정.

38) 참조, 최경석, 『인간 생명의 시작은 어디인가』, 서울: 북디자인 투피피, 2009.

39) 대립된 각 학설에 대한 설명은 방승주, “배아와 인간존엄”, 「법학논총」 제25집 제2호(2008), 3면 이하.; 손명세·유호정·이경환, “인간의 시점에 대한 우리 법의 입장 고찰”, 「한국법학」(2002), 267면 이하.; 최경석, “출생 전 생명윤리에 대한 생명윤리적 고찰”, 「의료법학」 제10권 제1호(2009. 6), 17-19면.; 김은애, “출생 전 생명에 대한 헌법적 고찰 -태아 및 배아의 생명권과 그 제한을 중심으로-”, 「의료법학」 제10권 제1호(2009. 6), 53면 이하 등 참고하라.

수정시설은 인간의 생명은 난자와 정자의 수정과 더불어 시작된다고 보는 견해로써 태아의 기본권 주체성을 인정하는 설이다. 이 견해에 따르면, 난자와 정자가 수정되어 만들어진 수정란은 수정의 시점부터 한 인간으로의 생물학적 자료들을 완벽하게 갖추고 있음으로 생명력을 지닌 인간의 법적·도덕적 지위가 인정된다고 한다. 더 나아가 태아가 수정되어 자신만의 유전인자가 확정되는 순간부터 인간의 정체성이 시작되어 평생 이어지는 것으로, 인간 생명의 출발 시점에 이미 유전적 개체성이 결정되어 있다는 입장이다.⁴⁰⁾ 뿐만 아니라 과학적인 근거로써 수정란이 인간의 종에 속해 있다는 점, 정자와 난자의 수정을 통해서 형성 중에 있는 태아의 생명은 계속적 발생성, 유전적 정체성, 내재적 잠재성을 지녔다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인간의 생명은 수정시부터 시작된다고 한다.⁴¹⁾ 수정시설은 다수설로서 일부 학자들⁴²⁾에 의해 지지를 받고 있다.

(나) 착상시설

착상시설은 인간의 생명은 수정란이 모체에 착상 때부터 시작된다고 보는 입장이다(일명 개체화설). 이 견해는 독일의 법학자요, 괴팅겐대학교 교수였던 Werner Heun에 의해 알려졌으며⁴³⁾, 호주 멜버른 가톨릭 신학대학장이었던 노만 포드 신부의 주장을 근거로 인간의 생명의 시작은 수태되는 순간이 아니고 14일 뒤 쌍둥이로 될 가능성이 사라졌을 때라고 보는 입장이다.⁴⁴⁾ 이 견해에 따르면 수정 후 배아가 일란성 쌍둥이로 분할 할 수 있다는 사실 때문에 그 가능성이 있는 임신 초기 기간 동안 배아는 인간 개체라기보다 세포덩어리에 불과하고 인간의 생명체라고 하기 위해서는 14일이 지난 후 원시선이 발생한 이후여야 한다고 본다. 곧 인간의 생명이 수정 후 2주 지나서 분화와 개체화가 완료된 후 착상 종료로 비로소 인정된다는 것이다.

2) 통설 및 판례의 입장

수정시설과 관련한 통설과 판례를 검토해 보면, 우리 법에서 출산 전 생명에 대해 분명한 입장을 드러내고 있지 못한 상황이다. 하지만 형법 269조, 270조에서 낙태죄를 규정하고 있는 것은 태아를 보호해야 할 생명으로 간주하고 있는 것은 분명하다. 더 나아가 민법 제762조에서 “태아는 손해배상의 청구권에 관하여는 이미 출생한 것으로 본다”라는 규정은 태아를 권리의 주체로 인정하고 있다고 보여진다. 특히 대법원 판례는 “손해배상 청구권 또는 상속 등 특별한 경우에 한하여 제한된 태아의 권리능력을 인정”하고 있다고 판시한 바 있다.⁴⁵⁾ 이같은 판례의 입장에 따라 통설은 민법 제3조에서 규정한 대로 태아가 살아서 태어난 경우에 한하여 태아의 권리 주체를 인정함으로써⁴⁶⁾ 생명의 시작을 태아로 보고 있다.

40) 구인희, “인간 배아의 정체성과 생명권”, 「인간연구」 제26호(2014), 39쪽.

41) 김선택, “출생 전 인간생명의 헌법적 보호”, 「헌법논총」 제16집(2005), 헌법재판소, 155면.; 김태호,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1항 등 위헌확인 - 초기배아가 제기한 헌법소원심판 청구가 적법요건을 갖추었는지 여부 등 -”(현재 2010. 5. 27. 2005헌마346, 판례집 22-1하 275).

42) 김선택, 앞의 책, 165면.; 방승주, “착상전 진단의 헌법적 문제”, 「헌법학연구」 제16권 제4호(2010), 67면.; 정문식, “배아줄기세포연구시 배아의 생명권과 인간존엄”, 「한양법학」 제18집(2005), 120면.

43) Werner Heun, Embryonenforschung und Verfassung - Lebensrecht und Menschenwürde des Embryos, JZ 2002, S. 521, 522., 김학성, 위의 책, 2014, 179면에서 재인용.

44) 피터 싱어, 구역모 역, 『인간의 생명은 언제 시작되는가』, 생명의료윤리(1999), 89면., 김일수, “인간 복제의 윤리적·법적 문제”, 「법조」 (1999), 10면에서 재인용.

45) 대법원 1982. 2. 9. 선고 81다534판결.

헌법재판소에서도 각 사안에 따라 근소한 차이를 보이긴 하지만 태아의 생명권을 인정하는 입장을 보임으로써 생명의 시작점이 태아에 있는 것으로 판단했다. 예컨대, 2008년 결정에서 헌법재판소는 모든 인간은 헌법상 생명권의 주체가 되며, 형성 중의 생명인 태아도 모체와 별개로 생명권의 주체라고 판단했다. 같은 결정은 태아가 세포에 불과하다는 주장이 헌법 질서상 잘못된 주장임을 확고히 하여 생명윤리의 쟁점에 한 획을 그었다고 볼 수 있다.⁴⁷⁾ 2010년 결정에서도 “출생 전 형성 중의 생명에 대해서 헌법적 보호의 필요성이 크고, 일정한 경우 그 기본권 주체성이 긍정된다”고 판시하였다.⁴⁸⁾

이처럼 헌법재판소는 인간의 생명권에 대해 기본권 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기본권이며, 더 나아가 태아는 인간으로 태어날 잠재적 가능성이 크고 인간으로 성장할 가능성과 예정 가운데 있는 하나의 생명체임으로 태아의 기본권 주체성을 인정함으로써⁴⁹⁾ 태아가 생명의 시작임을 보여 주었다. 대법원에서도 “인간의 생명은 임태된 때부터 시작되는 것이고, 회임된 태아는 새로운 존재와 인격의 근원으로서 존엄과 가치를 지닌다”고 판시하여⁵⁰⁾ 생명의 시작이 태아에게 있다는 입장을 취하였다.

3) 결 토

수정시설은 기독교와 가톨릭⁵¹⁾이 견지하고 있는 입장이며, 인간 생명의 시점에 대한 보수층의 입장이기도 하다. 태아에게서 사람의 생명성을 인정하려면 유전적 동일성과 성체로 발달해 가는 생명의 잠재성을 갖춰야 한다. 그런데 유전적 동일성이나 생명의 잠재성은 수정에 의해 완성된다. 태아에게는 발육 능력을 필요로 하고 발육능력은 세포 분열로 확인된다. 심지어 사망한 시체에서도 유전적 동일성이 유지된다. 수정된 이후의 수정란은 발육 능력과 유전적 동일성을 모두 갖출으로써 생명의 시작점은 수정시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⁵²⁾

수정시설이 갖는 의의는 인간으로서 생명이 보호되는 시점을 확장시킬 수 있는 점, 그 무엇보다 가치있는 인간의 생명이 폭넓게 보호될 수 있는 기반을 제공해 준 점, 그리고 발생학적 연구를 비롯한 자연과학·기술발전 및 생명의료과학을 발전시키는데 공헌한 점 등을 생각할 수 있다.⁵³⁾ 한편 착상시설에 제기되는 한계와 문제점도 있다. 이를테면, 인간의 생명이 태아의 수정과 분할, 착상에 이어 분리와 출산이라는 과정을 통하여 탄생된다. 이 과정에서 ‘착상’은 일련의 과정에서의 한 단계에 불과하다. 그렇다면 ‘착상’이라는 단계를 정하여 생명의 유무를 판단하는 것은 자의적이며 임의적이라는 지적을 피할 수 없다.

46) 최경석, 앞의 책, 2009, 21면.

47) 유지홍, “헌법재판소 결정에 나타난 배아의 법적지위에 관한 고찰”, 「인격주의 생명윤리」 10권 2호 (2020), 80면.

48) 헌법재판소 2010. 5. 27. 선고 2005헌마346 전원합의체 결정.

49) 고봉진, “태아의 헌법상 지위”, 「법과 정책」 제22집 제1호(2016), 8쪽.

50) 대법원 1985. 6. 11. 선고 84도1958 판결.

51) 참조, 구인희, “인간 배아의 정체성과 생명권”, 「인간연구」, 제26호(2014, 봄), 48면.

52) 유지홍, “태아의 권리능력 재논의 필요성에 대한 제언(提言)”, 「한국의료윤리학회지」 제17권 제1호 (2014), 20면.

53) 김은애, “출생 전 생명에 대한 헌법적 고찰 -태아 및 배아의 생명권과 그 제한을 중심으로 -”, 「의료법학」 제10권 제1호(2009), 53-54면.

2. 안락사에 대한 실정법적 논의

(1) 연명의료결정제도

“연명의료결정제도”란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와 연명의료중단 등의 결정을 통해 환자의 최선의 이익을 보장하고 자기결정을 존중하여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보호하는 제도를 말한다.⁵⁴⁾ 이 제도에 따라 모든 환자는 최선의 치료를 받으며, 자신이 질병 상태나 향후 자신에게 시행될 의료행위에 대하여 알고 스스로 결정할 권리가 있다.⁵⁵⁾ 우리나라에서 연명의료결정제도가 도입된 배경은 이른 바 ‘보라매병원 사건’과 ‘김 할머니 사건’으로 임종과 관련한 소송이 진행되면서 연명의료결정법이 제정된 계기가 되었다. 그후 2015.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에 대한 연명의료 유보 및 중단에 관한 법률안이 제안되어, 2016. 2. 호스피스·완화의료와 연명의료를 함께 다루는 「호스피스·완화의료 및 임종 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결정에 관한 법률」(「연명의료결정법」)이 제정되었고, 2018. 2. 4. 연명의료결정제도가 시행되었다.

(2) 연명의료 관련 판례

1) 대법원 2002도995 판결

대법원은 2004. 6. 24. 의학적 권리에 반하는 환자의 퇴원에 대한 의료진 및 가족을 살인죄 및 살인방조죄로 인정한 판례를 남겼다. 당시 보라매 사건(1997)은 환자에 대한 의학적 판단과 돌봄의 의무보다 가족의 퇴원 요구에 응한 의료진이 환자의 인공호흡기 작용을 중단하여 환자가 사망하면서 벌어졌다. 이 사건에 대해 대법원은 “보호자의 간청에 따라 치료를 요하는 환자에 대하여 치료중단 및 퇴원을 허용하는 조치를 취함으로써 환자를 사망에 이르게 한 담당 전문의와 주치의에게 살인방조죄가 성립한다”고 판시하였다.

2) 대법원 2009다17417 판결

보라매 사건 후 10여년 뒤 벌어진 김 할머니 사건과 관련하여 대법원은 2009. 5. 21. “연명치료 중단의 요건으로써 환자가 회복 불가능한 사망의 단계에 진입하였고 연명치료 중단을 구하는 환자의 의사를 추정할 수 있다”고 판시함으로써 의학적으로 회생 가능성이 없는 환자라면 해당 환자가 남긴 사전 의료지시나 환자 가족이 진술하는 환자의 의사에 따라 연명치료를 중단하는 것이 가능하다는 사례를 남겼다.

54) 「호스피스·완화의료 및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결정에 관한 법률」(약칭: 「연명의료결정법」) 제1조 이 법은 호스피스·완화의료와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와 연명의료중단등결정 및 그 이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환자의 최선의 이익을 보장하고 자기결정을 존중하여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보호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찾기쉬운생활법령정보, 2023. 2.24. 최종 검색.

<https://easylaw.go.kr/CSP/CnpClsMain.laf?csmSeq=1663&ccfNo=1&ccnNo=1&cnpClsNo=1>
55) 「연명의료결정법」 제3조 제2항.

3) 헌법재판소 2008헌마385 결정

헌법재판소는 2009. 11. 26. 입법부작위 위헌확인 사건에서 “연명치료 중단에 관한 결정 및 그 실행이 환자의 생명단축을 초래한다 하더라도 이를 생명에 대한 임의적 처분으로써 자살이라고 평가할 수 없고, 오히려 인위적인 신체침해 행위에서 벗어나서 자신의 생명을 자연적인 상태에 맡기고자 하는 것으로써 인간의 존엄과 가치에 부합한다 할 것”이라고 결정하였다. 이어 “그렇다면 환자가 장차 죽음에 임박한 상태에 이를 경우에 대비하여 미리 의료인 등에게 연명치료 거부 또는 중단에 관한 의사를 밝히는 등의 방법으로 죽음에 임박한 상태에서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지키기 위하여 연명치료의 거부 또는 중단을 결정할 수 있다 할 것이고, 위 결정은 헌법상 기본권인 자기결정권의 한 내용으로서 보장된다 할 것”이라고 하여 ‘존엄한 죽음을 스스로 결정하고 선택할 권리’를 환자의 자기결정권의 한 내용으로 보면서 이를 기본권으로 인정하였다.⁵⁶⁾

4) 검 토

대법원은 헌법상 자기결정권을 근거로 환자의 의식 유무에 관계없이 연명치료 중단을 인정하는 판결을 내렸다. 그러나 환자가 자기결정권을 행사하여 의사를 표한 것으로 가정(假定)하여 연명치료를 중단할 경우에는 자기 결정권의 본질상 문제가 제기된다.⁵⁷⁾ 의사결정 능력이 없는 환자가 연명치료를 중단했을 것이라는 가정(假定)은 환자 본인의 결정여부를 확인할 수 없는 가정(假定)을 받아들여 시행함으로써 자기결정권의 본질에 벗어날 뿐만 아니라 논리성도 부족하다. 게다가 의사 결정능력이 없는 환자가 의사를 표했을 것이라는 가정(假定)은 환자 본인의 의사라기보다는 환자의 가족이나 가정적인 의사가 반영되었을 가능성이 더 크다는 것이 자연스러운 귀결이다.

따라서 환자가 의식이 없는 경우라도 인간으로서의 존엄성과 가치가 심각하게 훼손되는 연명치료 중단에 대한 논란은 그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헌법재판소가 ‘존엄한 죽음을 스스로 결정하고 선택할 권리’를 기본권을 인정한 것 역시 법적인 영역을 넘어 죽음에 대한 가치관의 유형에 따른 시각 차이로 인한 논란도 예상된다. 존엄한 죽음을 스스로 선택할 권리와 생명을 경시하는 풍조에 대한 괴리를 어떻게 풀어나가느냐의 문제도 제기될 수 있다고 보여진다. 그런 면에서 안락사에 대한 다양한 계층, 곧 종교계·의학계·법조계·생명윤리학계 등을 망라한 사회적 합의가 절실해 보인다.

(3) 헌법에 근거한 논거들

죽음에 대한 헌법적 논의는 죽음을 맞는 사람이 죽음을 맞이할 시기, 장소, 방법 등에 대하여 스스로 결정할 수 있어야 한다는 관점으로써 안락사라고 일컫는 ‘생명을 스스로 끊을 권리’에 관한 것이다.⁵⁸⁾ 여기에서는 헌법에 근거하여 안락사 지지자들의 논거들과 반대하는 논거들을 파악해 본다.

56) 백수원, “죽음, 안락사, 생애마무리에 관한 헌법적 논의 -‘생애마무리 지원 법안’에 관한 내용을 중심으로-”, 『미국헌법연구』, 제30권, 제3호(2019), 86면.

57) 허순철, “헌법상 연명치료 중단 - 대법원 2009. 5. 21. 선고 2009다17417 판결의 의의를 중심으로 -”, 『공법학연구』 제11권 제1호(2010), 182면

58) 백수원, 앞의 책, 2019, 88면.

1) 안락사 허용을 지지하는 논거들

(가) 자기결정권

자기결정권은 우리 헌법에 열거되지 아니한 기본권으로서 포괄적, 보충적 기본권으로써 법적 근거는 헌법 제10조 제1문 후단의 행복추구권에서 구할 수 있다.⁵⁹⁾ 헌법재판소도 이를 뒷받침하면서 일관되게 헌법 제10조 인간의 존엄과 가치 및 행복추구권 규정에서 자기결정권이 도출된다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⁶⁰⁾ 안락사 허용을 지지하는 사람들은 “개인이 자신의 삶에 중대한 사항에 대하여 스스로 자유롭게 결정하고 그 결정에 따라 행동할 수 있는 권리”⁶¹⁾가 자기결정권이라면, 스스로의 생명을 종결하는 행위도 자기 결정권에 의해 보장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나) 양심의 자유

안락사의 합법화를 지지하는 자들은 양심의 자유를 논거로 제시하기도 한다. 이 입장은 자발적으로 자신의 생명을 종결하는 결정은 결코 손쉬운 것이 아니지만 개인의 도덕적 신념에 따라 이루어지기 때문에 양심의 자유에 따라 자기 생명을 종결하는 결정을 존중해야 한다는 것이다. 특히 이들은 안락사를 불법으로 간주하여 처벌한다면 국가가 개인에게 특정한 도덕적 결정을 강요하는 것과 다를 바 없기 때문에 양심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라고 주장한다.⁶²⁾

(다) 종교의 자유

종교의 자유도 안락사의 합법화를 지지하는 자들이 내세우는 논거다. 이들은 안락사를 불법화하는 것은 종교, 특히 기독교와 가톨릭의 전통에서 출발한 것을 강조하면서, 종교의 자유에 근거하여 안락사의 합법화를 주장한다. 종교의 자유가 인정된다면 안락사 반대의 근거도 사라진다는 논리를 내세우며 안락사는 합법화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⁶³⁾

(라) 사생활의 자유

일부에서는 사생활의 자유에 따라 안락사가 합법화되어야 한다는 논거다. 헌법재판소는 사생활의 자유에 대해 “국가가 사생활의 자유로운 형성을 방해하거나 금지하는 것에 대한 보호를 의미한다”⁶⁴⁾고 판시한 바 있다. 따라서 국민 개개인의 신체는 사생활의 자유에 의해 보호받아야 한다는 것이다. 그렇다면 자신의 생명을 스스로 생명을 지속할 것인지 종결할 것인지에 대해서 스스로 결정할 수 있도록 사생활의 자유를 보장해야 한다는 것이다. 그런 면에서 안락사가 합법화되어야 한다는 논리를 펼친다.⁶⁵⁾

2) 안락사 허용을 반대하는 논거들

59) 성낙인, 앞의 책, 2022, 1168-1169면.

60) 헌법재판소 1991. 4. 1. 선고 89헌마160 결정.; 헌법재판소 2002. 7. 18. 선고 2000헌마327 결정.; 헌법재판소 2010. 5. 27. 선고 2005헌마346 결정.; 헌법재판소 2005. 5. 26. 선고 99헌마513 결정.; 헌법재판소 1990. 9. 10. 선고 89헌마82 결정.

61) 성낙인, 앞의 책, 1168-1169면.

62) 조한상, “안락사에 관한 헌법학적 고찰”, 「동아법학」 제53호(2011), 49면.

63) 조한상, 위의 책, 2011, 50면.

64) 헌법재판소 2007. 5. 31. 선고 2005헌마1139 결정.

65) 조한상, 앞의 책.

(가) 인간의 존엄과 가치

헌법 제10조는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라고 명시하여 인간의 존엄과 가치를 기본권 보장의 장 첫머리에 명시함으로써 기본권 보장의 대전제를 선언하였다. 이는 헌법이 보장하는 자유와 권리의 주체인 인간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는 존재라는 것을 천명해 준다.⁶⁶⁾ 이처럼 인간의 존엄과 가치는 우리 법질서의 근간이 되는 이념으로 명시되어 있다.⁶⁷⁾ 그렇기 때문에 인간의 존엄과 가치는 입법 작용 및 국가 행위 등에 의해서 침해될 수 없으며, 어떤 개인의 기본권으로도 다른 사람의 존엄과 가치를 침해할 수 없다. 따라서 육체적으로 당하는 고통스러운 상황을 면하기 위하여 자신의 목숨을 끊어서는 안되며, 스스로를 고통 완화의 수단으로 이용하는 것도 금할 일이다. 더 나아가 사람에게는 인간성을 처분할 권리가 없으며, 다른 사람이나 자기 스스로에게도 부여되지 않기 때문에 안락사는 법적으로 허용될 수 없다는 것이다.⁶⁸⁾

(나) 기본권의 전제로써의 생명권

안락사의 허용을 반대하는 가장 기본적이고 강력한 논거는 생명권이다. 그런데 생명권은 헌법에 명시적으로 규정되어 있지 않다. 하지만 헌법재판소에서 인간의 생명 및 생명권에 대해 당연히 인정되는 기본권으로 판시한 바 있다: “인간의 생명은 고귀하고, 이 세상에서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존엄한 인간 존재의 근원이다. 이러한 생명에 대한 권리, 즉 생명권은 비록 헌법에 명문의 규정이 없다 하더라도 인간의 생존본능과 존재 목적에 바탕을 둔 선형적이고 자연법적인 권리로써 헌법에 규정된 모든 기본권의 전제로서 기능하는 기본권 중의 기본권이다.”⁶⁹⁾ 이 결정에서 헌법재판소는 생명권을 헌법 제37조 제1항에 따른 ‘열거되지 아니한 기본권’으로 정의한다.

여기에서 기본권으로써의 생명권을 인간 존엄의 영역으로 볼 것인지, 일종의 신체의 자유로 해석하여 자유권으로 볼 것인지에 대해서는 학자들간에도 견해의 대립이 있다.⁷⁰⁾ 한 견해는 생명권을 인간의 존엄의 영역으로 이해하는 입장으로, 생명이 세상의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존엄한 인간 존재의 근원이라는 헌법재판소의 태도에 따라 모든 기본권의 전제가 되는 생명권의 근거를 헌법 제10조에서 찾는 것이 타당하다는 입장이다.⁷¹⁾ 생명권을 인간의 존엄에 기초한 것으로 이해한다면 사람은 자기가 생명권의 주체라고 할지라도 자신의 생명을 임의로 해하거나 자유롭게 처분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생명권의 주체가 개인에 주어진 주권적 권리만이 아니라 객관적 가치질서로 존재하기 때문에 자신의 생명을 자유롭게 포기할 권리를 가질 수 없다고 본다. 그렇다면 안락사가 헌법적으로 허용될 수 있을지의 여부는 매우 희박해진다.⁷²⁾ 또 하나의 견해는 생

66) 정종섭, 앞의 책, 2022, 419면.; 헌법 제10조에서 말하는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가 구체적으로 무엇을 뜻하는 것인가에 대해서는 학자마다 견해가 다르다: 존엄과 가치를 구별하는 견해(김철수), 존엄과 가치를 통일적으로 이해하는 견해(권영성), 존엄과 가치를 동의어로 보는 견해 등이 있다., 정종섭, 앞의 책, 2022, 420면.

67) 조한상, 앞의 책, 53면.; 정종섭, 위의 책, 421면.

68) 조한상, 앞의 책.

69) 헌법재판소 1996. 11. 28. 선고 95헌바1 결정.

70) 백수원, 앞의 책, 2019, 90면.

71) 김학성·최희수, 앞의 책, 2022, 408-409면.

72) 백수원, 앞의 책, 91면.

명권을 신체의 자유에서 파생된 권리로 이해하는 입장이다. 이 견해에 의하면 안락사에 대한 헌법적 제재는 유연해질 수 있다. 생명권을 인간의 존엄의 영역으로 받아들이는 입장에서 조차 존엄사를 인정하는 점을 고려하면, 헌법상 혹은 본질적으로 안락사의 허용이 가능하다고 할 수 있다.⁷³⁾

(다) 평등권

안락사에서 평등권 침해 여부가 논의될 수 있다. 죽음을 스스로 선택할 수 있는 자와 타인의 도움없이는 죽음을 선택할 수 없는 자가 있다고 보면, 안락사에 있어서 평등의 문제가 제기될 수 있다. 정상적인 사람들은 자기 생명을 종결하는 문제에 대해 스스로 결정을 내릴 수 있다. 하지만 극심한 육체의 고통이 있거나 거동이 불편한 경우 혹은 장애가 있는 경우에는 어떤 선택도 할 수 없게 된다. 그럴 경우 국가에서 안락사를 허용하지 않기 때문에 부당한 차별을 받게 되어 평등권을 침해한다는 주장이다. 이와 반대로 죽을 권리가 평등권의 침해라고 보는 것이 오히려 쉽게 죽을 수 있게 만들어서 평등권을 침해한다는 입장도 있다. 예컨대, 장기간 고가의 치료를 감당하기 어려운 사람들은 불가피하게 그리고 필연적으로 선택할 가능성이 있는 것이 바로 안락사다. 그런 현실적인 이유로 인해 소외 계층이 평등하게 치료받고 생존할 권리가 침해될 수 있다는 문제점이 제기될 수 있다.⁷⁴⁾

3) 검토와 전망

안락사의 법적 허용을 지지하는 논거들과 반대하는 입장들은 나름대로 헌법적 근거를 토대로 주장을 펼친다. 양측의 주장을 쉽게 수용할 수 있는 부분도 있으나, 일부는 받아들이기 어려운 부분도 있다. 그러나 위의 여러 논거들 중에서 우리 헌법질의 근간이 되는 이념으로써 인간의 존엄과 가치에 따라 안락사의 법적 허용 여부를 판단하는 것이 타당성이 있으며 설득력 있는 우월적 입장이라고 생각한다. “인간의 존엄과 가치는 헌법상 최고의 원리이며, 원칙으로 제한할 수 없다”⁷⁵⁾는 대원칙이기 때문이다. 더 나아가 “인간의 존엄과 가치는 국가의 근본 질서이며, 기본권 보장에서도 최고의 가치”⁷⁶⁾임으로 어떤 논거들도 그 대원칙을 넘어설 수 없다는 판단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간의 존엄과 가치라는 헌법적 대전제를 근거로 안락사에 대한 법적 허용 여부의 논란을 종결시키는 것은 죽음을 앞둔 개인의 환경들과 여건 및 사회적인 현실들을 고려할 때 성급하다는 생각이 든다. 더욱이 기본권 사이의 충돌들, 곧 자기결정권과 생명권 사이의 충돌은 현실적으로 합의될 수 없는 면들이 있다. 따라서 안락사의 법적 허용 여부와 관련하여 신양적 검토를 통해 그 해결책을 찾아보려고 한다.

IV. 인간 생명에 대한 신양적 검토

73) 그 외에 생명권을 인간의 존엄의 영역에 둘 수 없는 사회적 요인들을 고려하여 안락사를 헌법 제12조를 근거로 해석하는 견해도 있다(백수원, 앞의 책).

74) 백수원, 위의 책, 92면.

75) 성낙인, 「헌법학」, 서울: 법문사, 2022, 1155면.

76) 성낙인, 위의 책, 1147면.

성경은 인간 생명의 시작에 대해 명시적으로 밝히고 있지 않다. 그러나 성경의 구절들을 통해 신앙적인 입장을 추론하고 정리할 수 있다. 성경에 나오는 인간 창조 이야기는 인간 생명의 근원을 파악할 수 있고, 예수의 성육신 사건이나 세례요한의 탄생 사건 등은 임신 전에 미리 예고된다. 또한 태중의 생명에 대한 고백이나 그와 유사한 성경 저자들의 증언 등으로 알 수 있는 몇 가지 사실들은 생명은 하나님의 창조물이라는 것, 생명은 하나님의 주권에 의해 세상에 태어난다는 것, 그리고 생명은 정자와 난자가 수정하는 순간에 시작된다는 것 등이다. 특히 구약 성경의 몇 구절들 역시 수정론을 지지할만한 충분한 근거가 된다. 이와 같이 인간 생명의 시작에 대한 신앙적 관점은 수정 때부터라는 것이 전통적 기독교의 주장이다.⁷⁷⁾

1. 인간 생명의 개념

인간 생명의 시작이 어디에 있는지 신앙적 논증에 앞서 전제적으로 파악해야 할 것은 성경에서 말하는 생명이 무엇이냐의 개념의 문제다.

(1) 구약의 개념

구약에 나온 생명은 용도에 따라 다양하게 쓰여졌다.

1) ‘활동’이라는 용어에서 유래한 생명의 개념으로 쓰인 히브리어 ‘하이임’이 있다. 구약에서 쓰여진 ‘하이임’으로서의 생명은 ‘움직이거나 활동하는 것’을 의미하며, ‘하이임’은 풀어지거나, 잠자고 있거나, 무기력한 비생명의 상태와 대조된 개념으로 쓰여졌다.⁷⁹⁾ 특히 ‘하이임’으로서의 생명의 개념은 ‘사는 것’ 혹은 ‘삶’과 관련된다.⁸⁰⁾ 따라서 인간이 ‘사는 것’ 곧 ‘생명 혹은 삶’을 누리는 것은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베풀신 모든 복을 누리며 사는 것을 의미한다.⁸¹⁾

2) ‘혼’(soul)이란 뜻이 담긴 생명의 개념으로써 히브리어 ‘네페쉬’가 있다. 이 개념은 죽어있는 사람이나 짐승에게 공통된 것으로써 ‘존재’ 혹은 ‘자아’와 관련된 용어다(레21:11), 때로는 ‘개인적인 존재’ 혹은 ‘살아 있는 독특한 나’를 의미하기도 한다. 특히 ‘네페쉬’라는 단어는 문맥에 따라 다양한 용어로 번역된다. 예컨대, ‘생명’, ‘생령’, ‘전인’, ‘의지’, ‘욕구’, ‘지성’, ‘숨 혹은 바람’, ‘활발한 운동 혹은 느낌’, ‘영의 효과’, 그리고 ‘불멸의 존재’ 등의 의미로 번역되어 쓰여졌다.⁸²⁾ 히브리어 ‘네페시 하야’(창2:7)는 ‘살아 있는 혼’으로서 구약에

77) 인간 생명의 시작에 대한 가톨릭의 입장에 대해서는 구인회, 앞의 책, 47-49면, 「낙태에 관한 선언」(신앙교리성, 1974, 12항: 이 선언에서 인간의 생명에 대한 존중은 생성과정이 시작되는 시점부터 요구된다고 천명하고 있다.); 우재명, “『생명윤리및안전에관한법률』에 대한 가톨릭생명윤리적 고찰”, 『신학과철학』 제8호(2006), 9-11면 등을 참고하라.

79) 구약에서 “생명”은 종종 빛, 즐거움, 환희, 기쁨, 감사, 충만함, 질서 그리고 움직이는 실체와 수반되고, 한편으로는 어둠, 절망, 좌절, 슬픔, 고통, 공허, 환란 그리고 침묵 등과는 대조된다.: 장화선, “생명개념의 전수를 위한 기독교교육”, 「기독교교육논총」 제36집(2013), 95면.

80) 여기에서의 ‘삶’은 하나님께서 인간에서 주신 모든 기능을 발휘하는 창조의 면류관, 혹은 피조물 종의 왕관으로서의 삶을 의미한다.

81) 장화선, 앞의 책.

82) 김은수, 『칼빈과 개혁신앙』 서울: SFC, 2011, 112면.; 장화선, 위의 책 재인용.

서는 ‘생기’ ‘생령’으로 번역되었다. 하나님께서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사람의 코에 생기를 불어 넣으심으로 사람의 생명이 되게 하셨고, 성령의 숨에 의해 인간이 ‘생령’이 되게 하셨다.⁸³⁾

3) 하나님의 영(spirit)을 의미하는 히브리어 ‘루아흐’ 와 호흡을 의미하는 ‘네샤마’가 생명의 개념으로 사용되었다. 이 용어들은 산 자를 죽은 자로부터 구분할 때 쓰여졌다(삼상 30:12; 롬27:3-4). 이 개념에 의하면 죽는다는 것은 ‘영’(spirit)이나 ‘생명’(life)을 놓어버리는 것을 의미하고, 다시 살아난다는 것은 ‘영’이나 ‘호흡’이 되돌아오는 것을 뜻한다(눅8:55).

위 세 부류의 용어들을 종합해 보면 구약에서 쓰여진 생명의 개념은 인간 안에서 육체적, 지적 그리고 영적 생명을 구분하지 않고 ‘정신·신체의 통일체’⁸⁴⁾를 이루고 있으며, ‘유기적 통일성’⁸⁵⁾을 지닌 특성이 있다.

(2) 신약의 개념

신약에서 쓰여진 ‘생명’의 개념도 상황에 따라 다양하게 쓰여졌다.

1) ‘삶의 과정’, 또는 ‘삶을 유지하는데 필요한 것들’을 의미하는(막12:44; 딤전 2:2) 헬라어 ‘비오스’(bios)가 있다. 이 단어는 사람의 생활 양식, 부 혹은 소유와 관련이 있다.⁸⁶⁾

2) 생명(life)에 해당되는 헬라어 ‘조에’(zoe)도 있다. 이 단어는 요한복음에서 많이 쓰여졌으며, 다양한 의미가 있다. 예컨데, ‘부활 생명’, ‘삶의 과정’, ‘혼의 생명’, ‘자연적인 생명’, ‘생명의 지속’ 등의 의미로 사용되었다.⁸⁷⁾ 각 상황에 따라서 어떤 경우에는 신체적 의미의 생명(롬8:38; 고전3:22)으로 쓰여지고, 다른 경우에는 하나님의 생명을 의미하는 용도로 쓰여졌고, 때로는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사람과 공유하시는 초자연적 생명을 의미하기도 했다(요5:21; 5:26).⁸⁸⁾ 요한복음의 저자 요한은 그 생명을 ‘영원한 생명’이라 칭했으며, 복음을 받아들일 때 초자연적인 생명이 공급된다고 했다.

3) 생명의 의미를 가진 헬라어 혼(soul)이나 ‘프슈케’(psuche), 자아와 생명을 의미하는 ‘프뉴마’(phenema: 영(spirit))도 있다. 생명으로서의 ‘혼’은 단순한 ‘존재’(being)이며, ‘자연적인 생명’을 의미한다(눅9:25).⁸⁹⁾ 이처럼 생명의 개념과 관련된 헬라어 ‘프슈케’와 ‘프뉴마’는 ‘내적인 인격체’ 혹은 ‘내적인 참된 자아’를 의미하기도 한다.⁹⁰⁾

83) Berkhof, L., 고영민 역, 『벌콥 조직신학 제 3 권 인간론』 서울: 기독교문사, 1978, 33면.

84) Douglas, J. D. (organizing editor), New Bible dictionary (Second Edition). Leicester, Inter-Varsity Press, 1982, 697면.

85) Berkhof, L., 앞의 책, 33면.

86) 장화선, 앞의 책, 96면.

87) Douglas, J. D., 앞의 책, 698면.

88) 장화선, 앞의 책, 96-97면.

89) 장화선, 위의 책, 97면.

위의 경우처럼 세 부류의 생명의 개념은 각각의 배경이나 상황에 따라 다른 의미로 쓰여졌다. 그 중에서도 예수 그리스도가 직접 언급하였던 ‘조에’의 경우 ‘영원한 생명’과 관련되고, 그것이 신약에서 강조적으로 사용된 생명의 개념이었다. 예수 그리스도는 생명에 대해서 자신이 직접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요14:6), 혹은 “나는 부활이요 생명”(요11:25)이라고 말함으로써 신약에서 사용된 생명의 개념이 지상에서 천상으로 이어질 영원한 생명임을 보여주었다.

(3) 교리적 규범으로써 개념

기독교에 있어서 교리란 성경의 가르침을 근거로 세운 본질적인 체계를 의미한다. 따라서 교리적 규범으로써 생명 개념은 성경과 신학적 가르침이 전제되며, 이 장에서는 개신교의 각 교단에서 채용하고 있는 헌법 및 교리 등의 규범을 중심으로 생명의 개념을 파악하고자 한다.⁹¹⁾

1) 대한예수교장로회 총회(합동)의 경우

대한예수교장로회총회(합동)(이하 ‘예장합동’으로 표기)은 ‘총회헌법’ 편 ‘대요리문답’⁹²⁾에 신학과 교리적인 측면에서 생명 개념이 함축되어 있다. 합동의 신학과 교리의 체계가 담긴 ‘대요리문답17’에는 사람의 창조에 대해 다음과 같이 규정한다: “하나님께서 모든 다른 피조물을 만드신 후에 사람을 남녀로 지으셨는데,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식과 의와 거룩함으로 지으시고 그들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법을 기록하시고 피조물 통제권과 함께 하나님의 법을 지킬 수 있는 능력을 주셨으나 타락할 수도 있게 지으셨다.” 이어 ‘대요리문답76’에는 “생명에 이르는 회개란 하나님의 성령과 말씀에 의해서 죄인의 마음 속에 이루어지는 구원의 은혜인데, --- 모든 죄를 떠나 하나님께 돌아와 범사에 새로 순종하면서 하나님과 함께 끊임없이 동행하기로 목적하고 노력하게 되는 것이다.”고 한다. 이는 “온전한 생명에 이르기 위하여서는 회개를 통하여 하나님께로 돌아와 범사에 순종하며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이다. 한편, 생명의 개념과 도덕법과의 관계 등도 규정하고 있다.⁹³⁾

2) 대한예수교장로회 총회(통합)의 경우

대한예수교장로회 총회(통합)(이하 ‘예장통합’으로 표기)는 ‘총회헌법’⁹⁴⁾ 제1편 교리 2부 신조, 3부 요리문답, 4부 웨스터민스터 신앙고백, 그리고 5부 신앙고백서에서 생명의 개념을 밝히고 있다. 교리편 3부 요리문답 문 12에 의하면, 하나님이 사람을

90) Douglas, J. D., 앞의 책, 698-699면.

91) 본고에서 파악한 개신교 각 교단의 교리적 규범은 1) 대한예수교장로회 총회(합동), 2) 대한예수교장로회 총회(통합), 3) 한국기독교장로회 총회(기장), 4) 기독교대한하나님의성회(순복음), 5) 기독교대한성결교회, 6) 기독교대한감리회 등의 신학적 입장이 담긴 헌법 및 신경 등에서 분석하였다.: 참고, 유경동, “생명개념과 생명윤리에 관한 법과 기독교의 입장 비교연구”, 「장신논단」 제47권 제1호(2015), 187-193면.

92) 예장합동 홈페이지, http://gapck.org/sub_06/sub01_01.asp 9. 28. 최종 검색.

93) 참조, 신5:1-3, 31, 33; 놀1:75, 10:26-27; 갈3:10; 살전5:23; 행24:16; 롬10:5; 갈3:10, 12 등.

94) 예장통합 홈페이지, <http://www.pck.or.kr/law.php?sca=%EC%A0%9C1%ED%8E%B8> 2022. 9. 28. 최종 검색., 이하 헌법 제1편 2부-5분까지의 내용은同一 홈페이지에서 인용하였음.

창조하셨을 때 완전한 순종을 조건으로 그와 더불어 생명의 언약을 세우시며, 선악과를 먹지 말도록 금하셨고, 먹으면 죽음의 고통이 있을 것이라고 하셨다. 여기에 명시된 ‘생명’은 창조시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완전한 순종을 조건으로 주신 언약을 통해서 주어진 일종의 축복이라고 말할 수 있다. 태초의 사람이 언약에 순종하면 생명을, 불순종하면 죽음 혹은 저주에 이르게 되는데, 그 갈림길에서 사람의 선택에 의해 생명과 저주가 갈려지기 때문이다.⁹⁵⁾ ‘웨스트민스터신앙고백’에서도 생명 개념을 찾아볼 수 있다. 제2장 2항에는 하나님이 생명의 근원이라는 것을 명시했다: “하나님은 모든 생명(요5:26)과 영광(행7:2)과 선(시119:68)과 복(딤전6:15, 롬9:5)을 자기 안에 스스로 가지고 계신다.”

3) 대한기독교장로회(기장)의 경우

대한기독교장로회(기장)(이하 ‘기장’으로 표기)는 헌법, 규칙집에서 생명의 개념에 대한 입장을 보이고 있지 않으며, 종교적 가치와 신앙인의 삶을 강조한다.⁹⁶⁾ 다만 기장의 생명 개념이 드러난 총회적인 문서는 2003년 총회 출범 50주년을 맞이하여 발표한 ‘희년 선포문’이다.⁹⁷⁾ 이 선포문에서 언급된 생명의 개념은 타교단의 경우와 다르다. 여기에서 강조한 생명의 개념은 인간의 존엄이나 가치 등의 측면 보다 정의·역사·평화·창조질서 등을 회복하는 차원에서 다음과 같이 ‘생명’을 강조한다: “새역사를 이루어가는 생명탑”, “창조질서를 회복하기 위한 하늘의 씨앗들로 살면서 역사의 생명을 이어 나가기 위해 십자가 기도의 행진과 함께 눈물로 복음의 씨를 뿌려왔다”, “과고된 자연을 하나님의 창조 질서로 회복시켜 이 땅이 생명공동체가 되도록 정의와 평화를 구현한다.”

4) 기독교대한하나님의성회(순복음)의 경우

기독교대한하나님의성회(순복음)(이하 ‘순복음’으로 표기)⁹⁸⁾가 지향하는 복음의 교리적 핵심은 “예수 그리스도의 축으심과 부활하심으로 나타난 충만의 복음, 만세 전부터 이미 계획하시고 섭리하시고 이루신 하나님의 영원한 복음, 지금도 우리 가운데서 예수 그리스도의 일을 동일하게 행하시는 성령 사역의 복음”에 있다고 한다. 그 복음이 바로 순복음이며, 순복음의 기반이 되는 것이 오중복음이라면서 교단이 지향하는 교리의 핵심을 오중복음에 담고 있다.⁹⁹⁾ 순복음 교단의 교리에는 생명에 관한 내용은 별

95) 유경동 교수는 예장통합의 생명 개념을 태초에 하나님께서 완전한 순종을 조건으로 맺으신 축복의 언약으로 이해한다(유경동, 앞의 책, 188면). 하지만 태초의 사람에게 부어주신 생기(히브리어 ‘루아흐’: 영, 혹은 기운, 바람, 호흡)에서 생명에 대한 최초의 개념을 찾는 것이 더 타당하다고 본다. 태초에 사람에게 부어주신 ‘루아흐’에 의해 사람에게 하나님의 생명이 주어졌다고 보는 관점은 언약신학적 측면이나 성경적 창조론에서 이미 정설로 이해되고 있다.

96) 유경동, 앞의 책, 191면.

97) 참조, 한국기독교장로회 총회 희년선포문, 기장총회 홈페이지,
http://www.prok.org/gnu/s1_7.htm 2022. 9. 28. 최종 검색.

98) 기독교대한하나님의성회 교단 교리편,

http://www.agk.or.kr/bbs/content.php?co_id=sub103, 2022.11. 18.

99) 기독교대한하나님의성회가 지향하는 “오중복음이란, 중생의 복음, 성령충만의 복음, 신유의 복음, 축복의 복음, 재림의 복음을 말하는데, 이것은 성경의 중요한 다섯 가지 주제이다. 이 다섯 가지 주제는 기독교 신앙의 시작과 과정과 결과에 대해서 다루고 있으며, 결국 신앙생활의 전 과정을 설명해 주는 핵심 주제가 되는 것”이라고 한다.. 위와 같은 홈페이지.

도로 찾아 볼 수 없다. 그러나 중생의 복음이라는 주제에 기록된 ‘하나님이 지으신 인간’ 편에서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았다는 사실을 기록함으로써 인간생명의 고귀함을 시시해 줌과 동시에 인간생명의 근원에 대한 교리적 입장을 밝히고 있다.

5) 기독교대한성결교회(성결교)의 경우

기독교대한성결교회(성결교)(이하 ‘성결교’로 표기)의 교리에도 생명에 대한 별도의 항목은 없으나 ‘헌법 제2장 교리’에서 하나님은 생명의 근원이심을 고백한다: “하나님은 우주에 유일무이하신 신이시니 유형무형의 만물을 한결 같이 창조하시고 통치하시며 보호하시고 섭리하신다. 진실하시고 영생하시어 권능과 지혜와 인자하심이 한이 없으시다. 이 하나님 일체 안에 동일한 본질과 권능과 영생으로 되신 삼위가 있으시니, 곧 성부와 성자와 성령이시다”. 또한 인류는 하나님께서 한 혈맥으로 지으신 동포요, 형제라고 고백함으로써 창조주 하나님과 피조물 인간과의 관계를 명시함으로써 인간의 생명의 가치와 존엄성을 드러내 보여주고 있다.¹⁰⁰⁾

6) 기독교대한감리회(감리교)의 경우

기독교대한감리회(감리교)(이하 ‘감리교’로 표기)는 헌법이나 교리편에도 인간 생명에 대한 규정을 찾아볼 수 없다. 그러나 감리교회에서 채용하고 있는 사회신경 교독문에는 창조주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은바 된 인간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하나님께서 지으신 창조세계에 대한 사회적 책임이 담겨 있다. 교독문은 “우리가 하나 되어 우리 창조주의 형상대로 다시 새로워지기를” 소망하는 기원을 서문에 적었고, 인도자는 “모든 생명체들이 강건하여 지기를 또한 바라시며, 귀중한 지구가 파괴 되는 것을 보시고 슬피 울고 계십니다.”라는 고백을 적고 있다.¹⁰¹⁾ 이는 주 만물에 대한 보존과 생태계 보호의 책임, 개인의 자유 인권 및 민주주의에 대한 강조, 자유와 평등 구현을 위한 차별금지 등을 강조하고 있는 부분이다.¹⁰²⁾

7) 결 토

지금까지 장로교의 3개 교단을 비롯하여 순복음, 성결교, 감리회 등의 교리적 규범을 통해서 생명의 개념 및 생명의 창조자 등에 대해 고찰해 봤다. 인간생명에 대해 교리적 규범으로 채택한 내용들을 통해서 다음과 같은 특징들을 검토해 본다.

(가) 예장합동이 채용하고 있는 생명에 관한 교리는 창조론이 핵심이다. 합동의 창조론에는 하나님은 생명의 시초이시며 인간생명의 근원자이심으로 그 존엄성을 해하는 것은 하나님께 대한 도전임을 확고히 하고 있다. 이로써 합동은 생명윤리의 쟁점인 낙태나 안락사 등은, 성경의 가르침에 비춰볼 때, 하나님께서 주신 생명을 해하는 비신앙적 행위이며, 인간생명의 존엄성을 위협하는 행위임으로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이다. 특히 합동의 신학과 교리¹⁰³⁾에서 쓰여진 생명의 개념은 하나님께서 인류에게 주신 선물이며,

100) 기독교대한성결교회 헌법편, <http://www.kehc.org/home/constitu>. 2022. 11. 18. 최종 검색.

101) 기독교대한감리회 통합자료실(감리교자료/세계감리교회) 성약 교독문 및 사회신경 교독문), <https://kmc.or.kr/combination-resources>, 2022. 11. 18. 최종 검색.

102) 유경동, 앞의 책, 190-191면.

하나님께 순종하고 회개하는 자들에게 주시는 복의 개념으로써 천상까지 이어지는 참된 안식과 평강 및 영원성이 포함된 개념이라고 할 수 있다.

(나) 예장통합의 신학과 교리에 드러난 생명 개념 역시 창조론 및 신학적 기반 하에서 삼위일체 하나님이 생명의 근원이시라는 것을 명시했다.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자에게는 생명을 주시고, 거부한 자들에게는 죽음에 이를 것이라는 기본적인 교리 하에서 생명의 개념을 이해하고 있다. 또한 생명의 완성이 그리스도의 재림 때 부활을 통하여 성취되고, 그것이 영원한 생명으로 이어지는 최후의 소망이 된다는 신앙고백서의 내용(제5부 6항 4)과 생명의 근원이신 삼위일체 하나님 앞에서 생명의 교제를 강조한 ‘21세기신앙고백서’는 예장통합의 교리와 신학의 요체를 보여주고 있다고 하겠다.

(다) 예장합동이나 예장통합과 같은 장로교이지만 진보 성향으로 알려진 기장은 추구하는 생명 개념에 있어서 차이점이 있다. 기장은 교리적 규범이나 인간의 존엄과 가치 측면보다 하나님의 통치 질서를 세우는 도구로써 생명을 강조한다. 기장에 따르면 생명이란 화해와 평화, 정의와 사랑, 생명과 공존 등의 가치를 실현하는 수단으로써 사회 정의 실현에 무게를 두고 있으며, 생명을 강조하면서도 신학적 진보성을 보이고 있는 것으로 평가된다.¹⁰⁴⁾

(라) 그 외 순복음의 경우는 인간생명에 대해 교리적 규범으로 정해 놓은 규정은 찾아보기 없지만 인간생명의 근원에 대한 입장을 분명하게 밝힘으로써 생명의 근원이신 하나님과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으신 바 된 인간생명의 고귀함을 시사해 준다. 성결교의 경우에도 교리에 인간생명에 대한 별도의 규정이 없으나 창조주 하나님과 피조물 인간과의 관계를 명시함으로써 인간생명의 가치와 존엄성을 극명하게 드러내 준다. 감리교의 경우는 기장의 경우처럼 하나님께서 지으신 창조세계에 대한 사회적 책임을 강조하면서도 생명보호를 비롯한 우주 만물에 대한 보존과 생태계 보호의 책임을 강조한다.

2. 인간 생명의 시작점

창조론의 수용 여부와는 무관하게 생명과학, 생식의학, 유전공학, 발생학 등의 각 분야마다 생명의 시작에 관한 논의가 진행되고 있으나 그 시점에 대해서는 난제에 부딪치고 있다.¹⁰⁵⁾ 그렇다면 성경에서는 인간생명의 시작점을 언제로 볼까?

103) 예장합동 홈페이지., http://gapck.org/sub_06/sub02_01.asp, 2022. 11.18. 최종 검색.

104) 2013년 부산 벡스코에서 열린 제10차 세계교회협의회(WCC) 총회의 주제가 “생명의 하나님, 우리를 정의와 평화로 이끄소서(생명과 정의, 평화)”였다는 것과 기장에서 생명의 개념에 대한 입장은 서로 맥을 같이한 것으로 분석된다., 동아일보, <https://www.donga.com/news/Culture/article/all/20131028/58499198/1>, 2013. 10. 28., 최종 검색.

105) 김일수, “법학의 관점에서 본 인간생명의 존엄성”, 2면, 이 논문은 2022.5.14. 가톨릭생명윤리연구소 20주년 학술대회에서 발표되었다.: 인간 생명의 시작에 대한 논문은 최경석, “인간 배아연구의 도덕성 논란과 인간 생명의 시작”, 「한국의료윤리교육학회지」 제8권 제1호(2005), 1-10면을 참고하고, 단행본은 최경석, 2009.를 참고하라.

(1) 하나님의 형상과 인간 생명의 상관성

성경은 인간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 받았다고 말한다(창1:26-27, 창5:1-2, 창9:6). 그렇다면 하나님의 형상과 인간 생명의 시작점은 어떤 상관이 있을까? 일부 학자들은 하나님의 형상을 ‘영혼’으로 규정한 다음, 영혼이 주입되는 시점에서 인간 생명이 시작한다고 주장한다.¹⁰⁶⁾ 그러나 하나님의 형상에 대한 해석은 신학자들마다 입장의 차이를 보인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분명한 사실은 인간 자체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존재이며, 하나님의 대행자라는 것이다.¹⁰⁷⁾ 성경의 가르침에 의하면, 하나님의 자기의 형상대로 인간을 지으셨다는 그 한 가지 사실로 인해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것은 부인할 수 없다.¹⁰⁸⁾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인간은 존엄하고 지고한 가치를 지닌 존재라는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형상은 우리가 소유하거나 잃어버릴 수 있는 능력이 아니라 인간 본질의 한 요소”¹⁰⁹⁾인 것이다.

그렇다면 인간생명의 시작을 어디에 둘 것인지에 대한 문제를 같은 논리에 의해 추론해 볼 수 있다. 인간생명의 시작에 관련한 기독교의 전통적인 입장은 성경의 가르침에 근거하여 “수정 순간부터 시작된다”는 명제를 정설로 받아들여 왔다. 그 명제는 자연과학적 방법을 통해서 검증된 사실이 아닐지라도 성경의 증언들과 신학 및 교리 등을 통해서 분명한 사실로 받아들여졌다. 논리적 관점에서도 아직 태어나지 않았다고 해서 태아가 인간의 형체를 갖지 않았다는 이유 혹은 이성적 능력이 결여되었다는 이유에 의해 태아가 인간의 생명체가 아니라고 할 수 없다.

(2) 성경 저자들의 증언들

하나님의 형상 개념에서 인간 생명의 시작점을 추론했다고 그것이 성경적인 입장으로 귀결되는 것은 아니다. 아직 해결되어야 할 문제는 인간 생명의 시점이 언제인가의 질문에 답해야 할 과제가 남아 있기 때문이다. 이 질문에 대한 해답은 신앙의 기반이 된 성경에서 직접 찾아보는 것이 가장 타당할 것이다.

1) 다윗의 증언

다윗은 시편에서 생명의 시점이 언제인지 중요한 단서들을 제공해 준다. 예컨대, “내가 모태에서부터 주를 의지하였으며, 나의 어머니의 배에서부터 주께서 나를 택하셨사오니”(시71:6)라는 시에서는 자신의 생명의 시점을 모친의 태종에 있을 때로 보았다. 여기에서 다윗은 모친의 태종에 있는 태아를 한 인격체로 보면서, 그때부터 하나님의 의지했다고 고백한 것이다. 이 고백은 자신의 수태와 태아의 발육, 심지어 출산에 이르

106) 김상득, “인간생명의 시작에 관한 성경적 이해 -생명윤리 물음에 관한 실천적 함의를 중심으로-”, 『신앙과 학문』 제15권 4호(2010.12), 37면.

107) 김상득 교수는 “‘형상’에 해당하는 히브리어 ‘tselem’이란 단어가 어원적으로 통치자의 대리인 내지 대사를 의미하기 때문에 이같은 입장을 뒷받침할만한 근거가 된다”는 입장을 밝혔다. 김상득, 위의 책, 37면.

108) O'Mathuna, D. P., “The God?”, 『Bioethics and the Future of Medicine』 (1995), 202면., 김상득, 위의 책, 38면 재인용.

109) Rae, S.B. & P.M. Cox., 김상득 역, 『Bioethics: A Christian Approach in a Pluralistic Age』 Cambridge: Wm B.Eerdmans Publishing Co., 서울: 살림, 1999, 210., 김상득, 위의 책, 38면, 재인용.

기까지 하나님의 보호와 돌보심과 섭리가 함께 하셨다는 의미로 분석된다. 다른 시편에서 다윗은 자신의 “내장”을 하나님께서 지으시고, “모태에서 나를 만드셨다”고 증언했다(시139:13). 더 나아가 자신의 “형질”이 이루어지기 전에 이미 하나님께서 자신의 이름을 주의 책에 기록하였다고 고백한다(시139:16).¹¹⁰⁾

이처럼 다윗은 육체로 태어나기 전 모친의 태중에 있을 때부터 이미 한 생명체로 존재했다고 고백했다. 곧 자신이 태어나기 전에 이미 하나님께서 자신의 내적 존재를 형성하셨다는 것이다. 뿐만 아니라 다윗은 임태시부터 출산시까지 태아를 “나”라고 칭함으로써 사람에게 부여하는 인격성을 태아에게 부여했다. 일반적으로 인격이 없는 “나”는 존재할 수 없다. 그렇기 때문에 태아를 “나”라고 표현한 것은 태중에 있었던 ‘나는 곧 생명체’라는 전제가 함의(含意)되어 있으므로 생명의 시작을 태아로 보았다고 말할 수 있다.

2) 육의 증언

구약에서 육은 “내가 난 날이 멸망하였더라면, 사내 아이를 배었다 하던 그 밤도 그려 하였더라면” (욥3:3)이라는 고백을 통해 출생한 날의 “나”와 임신한 날의 “태중의 생명”이 동일 인물이라는 것을 증언하였다. 여기에서 추론할 수 있는 것은 ‘임신한 바로 그 태아가 자신’이었으며, 임신의 순간부터 출생하는 순간까지 동일한 한 생명임을 보여주고 있다는 사실이다. 육은 다른 고백에서 자신의 몸을 하나님으로 지으셨다고 고백하면서, 자신의 가죽과 살, 뼈와 힘줄까지 하나님으로 뭉쳐서 생명을 주셨다고 증언하였다(욥10:8-12). 그 외에도 “나를 태 속에서 만드신 자”, “우리를 배속에서 지으신 자” (욥31:15) 등의 고백을 통해서 인간의 성행위로 인한 수태, 태아의 형성 등까지도 하나님의 창조 행위임을 보여주고 있다.

3) 이사야와 예레미야의 증언

이사야는 “여호와께서 태에서부터 나를 부르셨고 내 어머니의 복중에서부터 내 이름을 기억” (사49:1)하였다고 증언했다. 또한 그는 “네 구속자요 모태에서 너를 지은 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고 하면서 하나님으로 자신을 모태에서 지었다고 말하였다. 심지어 이사야는 자궁 속에 있는 자기 자신을 “종”이라고 부르면서, “이제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니니 그는 태에서부터 나를 그의 종으로 지으신 이시오” (사49:5)라고 하였다. 이사야는 태중에 있는 생명에 대해서 “나” 또는 “너”, “종”으로 칭함으로써 태아도 인격을 갖춘 생명체임을 인정하였다¹¹¹⁾ 예레미야도 자신을 하나님으로 태중에서 지으셨다고 고백했다. 그는 “내가 너를 모태에 짓기 전에 너를 알았고 네가 배에서 나오기 전에 너를 성별(렘1:5)” 하였다고 말했다. 이 구절에서 예레미야는 자신을 “모태에서

110) 호크마주석,

https://hangl.net/com_kor_hochma/140753?pk_vid=f4f69e91e45e1b86167728482780a225&page=13,

2023. 2. 24. 최종 검색.: 이 구절에서 형질(히브리어: 골렘)은 ‘아직 불완전한 나의 실체’(KJV: my substance, yet being unperfect) 혹은 ‘채 형성되지 않은 나의 몸’(NIV: my unformed body)으로 번역으로 된다. 성경 주석가들은 성경의 문맥과 용례를 종합하여 ‘골렘’은 아직 미완성 상태로 그 모양을 동그랗게 유지한 채 어머니 뱃속에서 출산을 기다리고 있는 상태인 ‘태아’로 해석한다.

111) 이상원, “인간배아의 지위에 관한 연구”, 「신학지남」 제316호(2013), 95면.

짓기 전”, 곧 임신하기 전에 이미 하나님이 선지자로 택정하셨음을 고백함으로써 태아의 생명이 인격의 주체인 것을 선언하였다. 선지자들의 이 같은 표현은 임신 중에 있던 태아, 더 나아가 착상되기 이전의 수정란마저도 일체 하나님께서 지으셨다는 것을 증언해 주고 있다.¹¹²⁾

(3) 예수의 성육신을 통해서 본 인간 생명의 시작

1) 예수의 성육신 사건

예수는 인간의 몸을 입고 세상에 태어났다. 여기에서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의 임신과 예수의 출생 중에서 예수의 성육신¹¹³⁾의 시점이 언제인가의 질문이 제기된다. 이에 대해 성경은 예수의 출생의 시점이 아니라 마리아의 임신 시점이 성육신의 시작이라는 것을 말한다. 또한 그 성육신의 시작은 성령에 의한 사역이라고 전한다. 예수는 성령을 통해 초자연적으로 마리아의 자궁에 임신되었고, 그 임신의 순간에 성육신이 시작되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같은 초미세한 상황과 생리학적 절차를 두고 신학자 토마스 토랜스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는 임신을 포함한 모든 단계를 거쳐 그 자신의 인간적 생명과 통합됨으로 인해 인간 본성을 갖게 되었다”¹¹⁴⁾고 하였다.

2) 의사 누가의 실증(實證)

성경 저자 중에서 유일하게 직업이 의사였던 누가¹¹⁵⁾는 세례요한의 출생 기사에서 “그가 --- 모태로부터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눅1:15)라고 기록했다. 누가는 또한 마리아의 자궁 속의 태아와 출생한 예수에 대해서 동일한 헬라어 '브레포스'(brephos)를 사용하였다. 예컨대, 누가가 사용한 “복 중의 아이” (눅1:41)와 “구유에 뉘어 있는 아기” (눅2:12)가 동일하게 ‘브레포스’ 였다는 사실은 자궁 속의 태아가 사람이라는 것을 입증해 준다. 이는 “성육신이 예수의 출생에서 시작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의 기적적인 임신에서 시작된다”¹¹⁶⁾는 것을 알려주는 단서다. 곧 수태되는 순간부터 인간의 생명은 시작된다는 의미다: “살아 있는 인간적 존재가 수태되는 순간부터 존재한 것이다.”¹¹⁷⁾

세례요한의 출생 기사에서 보여준 더 주목할 만한 사실은 마리아가 임신 소식을 듣고 엘리사벳의 집을 방문한 사건에서 발견된다. 마리아가 엘리사벳 집에 도착하자 엘리사벳은 마리아를 향해 “여자 중에 네가 복이 있으며, 네 태종의 아이도 복이 있도다” (눅1:42)고 복을 빈 후 “내 주의 모친” (눅1:43)이라고 칭했다. 여기에서 “내 주”는 임신 중에 있는 태아를 칭하는 말로써 태아가 바로 메시야인 것을 말해 주는 결정적인

112) 김상득, 앞의 책, 40면.

113) 이 사건을 신앙적 용어로 ‘성육신’(incarnation)이라고 한다. 기독교 신앙과 교리의 축을 이루고 있는 성육신은 인간의 이성으로 받아들일 수 없으며, 신앙에 의해서만 받아들일 수 있는 부분이다.

114) Rae, S.B. & P.M. Cox., (1999), 218면.; 김상득, 앞의 책, 41면 재인용.

115) 누가는 의사로서 자신이 저술한 누가복음이나 사도행전에서 종종 의학적인 용어를 사용하였다. 예컨대, 아이를 갖게 되다(눅1:24), 뱃속의 아이가 뛰놀다(눅1:41), 온몸에 나병이 걸린 사람(눅5:12), 출혈이 멈췄다(눅8:44)는 등의 기록들이다.

116) Rae, S.B. & P.M. Cox., (1999), 217면.; 김상득, 앞의 책, 재인용.

117) John Jefferson Davis, 『Evangelical Ethics: Issues Facing the Church Today』 Phillipsburg, New Jersey: Presbyterian and Reformed Publishing Co.(1985), 137면., 이승구, “생명의 기원에 대한 신학적 논의” 강의안 재인용.

증거가 된다. 이 구절을 통해 성육신은 예수의 출생부터가 아니라 임신부터 이미 시작되었으며, 동시에 예수의 성육신 사건을 통해서 인간의 생명은 출생 때부터가 아니라 임신 순간, 곧 수정이 시작되는 순간에 이미 시작되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V. 안락사에 대한 신앙적 논의

1. 성경이 말하는 죽음의 개념

죽음이란 모든 사람이 피해 갈 수 없는 절대적인 명제임과 동시에 어느 순간에 찾아올지 모르는 현실의 문제다. 사람은 언제 숨을 멈추어 죽음에 이르게 될지 아무도 예측하지 못한 가운데서 모든 사람은 어느 시점에 죽음을 맞게 된다. 그런 면에서 사실상 우리는 시한부 인생을 살고 있는 것이다. 그러면 죽음이 무엇인가? 일반적으로 사람들은 죽음을 가리켜 사람의 숨이 그치는 순간 그 사람의 존재가 소멸된다고 이해한다. 일반적으로 죽음이란 하나의 개체가 해체되어 더 이상 자취를 남기지 않게 되는 현상이라고 할 수 있다.¹¹⁸⁾ 그러나 성경과 신학자들은 죽음을 존재의 소멸로 보지 않고, “존재 양태의 변화”¹¹⁹⁾로 정의한다.¹²⁰⁾ 죽음이 영혼과 몸이 분리되는 상태로써 존재 양태의 변화라면, 그 변화란 어떤 상태일까? 그것은 생명의 하나님과의 단절된 상태를 의미한다. 사람은 창조시에 하나님으로부터 생기를 공급받은 후 생명을 유지해 왔으나 영혼과 몸이 분리됨과 동시에 생명의 하나님과의 관계도 단절된 상태가 되었다. 그 상태가 곧 죽음의 현상이다.

2. 죄의 결과로써의 죽음

모든 사람이 필연적으로 맞게 될 죽음이 왜 왔을까? 성경은 죽음을 죄의 결과로 묘사하고, 죽음의 원인은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고, 불순종한데 있다고 한다. 죄가 죽음을 가져온 것이다. 바울은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고 했다.¹²¹⁾ 기독교 사상의 체계를 세웠던 어거스틴은 “죽음이 죄의 결과요, 죄가 없으면 인간은 죽지 않았을 것”이라고 했다.¹²²⁾ 칼빈도 “아담의 배역함으로 천지의 모든 질서가 뒤틀어졌을 뿐 아니라 그의 종족인 인류가 파멸에 내던져졌다”고 했으며, “우주 전 지역에 창궐한 저주가 위로나 아래로나 흘러넘치는 것은 아담의 죄과 때문이므로 그것이 모든 후손에게 퍼지게 되었다”고 했다.¹²³⁾ 벌코프 역시 육체의 죽음을 영

118) 최태영, “죽음에 대한 신학적 고찰”, 『신학과목회』 제32집(2009), 2면.

119) 최태영, 위의 책.

120) 조직신학자 벌코프(L. Berkhof)도 육체의 죽음을 결코 소멸이 아니라는 입장을 취했고(벌코프, 권 수경·이상원 역, 『조직신학』, 서울: 크리스챤다이제스트, 1991, 936면), 에릭슨(M. J. Erickson) 역시 죽음은 존재 양태로의 전환이지 소멸이 아니라고 했다(최태영, 위의 책, 3면, 재인용).

121) 로마서5:21.: 그 외에도 성경은 곳곳에서 인간이 타락한 결과로 죽음에 이르게 되었다고 말한다. 창세기2:17; 3:19; 고린도전서15:26 등.

122) 최태영, 앞의 책, 6면.

적 죽음의 결과로 봤다.¹²⁴⁾

3. 그리스도인의 죽음의 의미

그리스도인이나 불신자를 막론하고 죄의 결과로 온 죽음을 맞게 된다. 모든 사람이 다 죽음을 피할 수 없다. 그런데 성경은 그리스도께서 죽음을 정복하기 위해 오셨다고 말한다. “죽음을 통하여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를 멸하시며 또 죽기를 무서워하므로 한평생 매여 종노릇하는 모든 자들을 놓아주려 하심이니”¹²⁵⁾라고 했다. 또한 “그는 사망을 폐하시고 복음으로써 생명과 죽지 아니할 것을 드러내신지라”¹²⁶⁾라고 기록되었다. 이 말씀대로 그리스도께서는 모든 사람들을 죽음으로부터 해방시키기 위하여 세상에 오셔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후 사흘만에 부활하심으로 사망을 물리치셨다.

4. 안락사와 연명치료에 대한 신앙적 검토

안락사나 연명치료에 대한 부분은 성경에 언급되지 않고 그 해답이 없는 상태이기 때문에 성경적 세계관과 가치관, 그리고 신앙적 관점에 따라 해석해 왔다. 이같은 신앙적 검토는 다음 세 가지 전제가 요구된다.

(1) 생명과 죽음의 주관자

연명치료 중단을 반대하는 신앙적 입장의 핵심은 하나님이 생명과 죽음을 주관하시는 분이라는 것이다. 이는 성경 전체에서 가르치고 있는 바이며, 기독교인들의 신앙 고백의 요체이기도 하다. 성경의 인물들과 모든 인류의 생명과 죽음은 하나님에 의해서 다스려졌다. 하나님은 생명의 주관자이면서도 동시에 죽음을 주관하신다. 따라서 안락사와 연명치료에 대한 신앙적 입장은 반드시 이 전제가 요구되어야 한다. 이같은 전제에 의해 기독교는 안락사와 연명치료에 대해서 부정적 입장을 취해왔다: ① 생명은 하나님께 달렸다, ② 인간은 생명에 대한 종결권이 없다, ③ 생명의 종결은 신에 대한 도전이다, ④ 의료진은 생명의 치유를 위한 부름에만 종사해야한다¹²⁷⁾ 등의 논지가 안락사와 연명치료에 대해 부정적인 입장을 취한 이유들이다.¹²⁸⁾

123) 칼빈, 문병호 역, 『기독교 강요2』, 서울: 생명의말씀사, 2020, 32-33면.

124) 최태영, 앞의 책, 7면.; 죽음의 원인에 대해서 자연현상 혹은 자연질서로 보는 견해도 있다. 예컨대, 자연현상으로 보는 견해는 켈레스티우스(Celestius), 슐라이에르마허(Schleiermacher), 알트하우스(P. Althaus) 등이 있고, 스토아 철학자들과 근대 철학자들, 곧 베이컨(E. Bacon), 헤겔(G.W.F. Hegel) 등은 죽음을 필연적이고 자연적으로 보았다., 최태영, 앞의 책, 5면.

125) 히브리서2:14-15

126) 디모데후서1:10

127) 김동건, “안락사에 대한 신학적 고찰”, 「기독교사상」 제571호(2006), 190면.

128) 반면에 안락사나 연명치료의 중단을 긍정적으로 보는 입장은 대체로 ① 환자의 자율성을 존중해야 한다, ② 개인의 양심에 따라야 한다, ③ 삶의 질을 고려해야 한다, ④ 인간은 죽음을 선택할 권리가 있다, ⑤ 고통을 경감시켜야 한다, ⑥ 사회경제적 부담을 덜어준다는 주장들이다(김동건, 위의 책, 192면). 이런 주장들은 현실적으로 타당성과 일리가 있어 보이지만, 주관적인 요소가 강하고 기독교의 가치관으로는 받아들이기 어려운 부분이 있는 것으로 평가된다.

(2) 그리스도인의 죽음과 부활

그리스도인에게 있어서 죽음은 끝이 아니라 영광스러운 새로운 시작이며, 죽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에 동참하게 된다. 후크마(A. A. Hoekema)는 그리스도인의 죽음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말한다. “우리의 가장 두려워하는 대적자가 우리를 위해 하늘의 복락에 들어가는 문을 열어주는 하인이 되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죽음은 끝이 아니라 영광스러운 새로운 시작이다.”¹²⁹⁾ 그리스도인의 죽음은 끝이 아니라 영광스러운 부활의 세계로 들어가는 새로운 시작이라는 것이 그리스도의 죽음의 의미다.¹³⁰⁾ 곧 그리스도인의 죽음은 영광의 광채를 입고 새로운 세계로 들어가는 출발점이 된다는 의미다.

(3) 인간의 존엄성과 가치

안락사나 연명치료에 있어서 기독교인 및 임종환자의 가족들이 반드시 기억해야 할 부분은 생명의 가치와 소중함을 인식해야 한다는 부분이다. 인간의 존엄성과 가치는 세상의 어떤 것에 비할 수 없을 만큼 고귀하다. 그리스도인과 임종환자 및 가족 구성원 모두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천하보다 귀한 존재임을 알아야 한다. 그런 인식이 부족하면 연명치료 중단을 허용할지라도 환자를 위해 치료를 중단한 것이 아니라 가족들의 편의를 위해 치료 중단을 허용하게 될 수도 있을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가족들이 먼저 환자의 생명이 얼마나 소중하며 고귀한지를 먼저 인식해야 할 것이다.

5. 신앙적 검토에 따른 대안

이와 같이 신앙적인 관점에 의해 안락사나 연명치료의 중단을 거부하면서 내세운 명분들은 기독교인들의 신앙고백이며, 기독교인으로서 반드시 따라야 할 규범이기도 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안락사나 연명치료 등에 대해서 기독교계의 학자들조차도 의견이 일치하지 않고 각자의 학문 신앙, 양심 등에 따라 차이가 많은 실정이다. 게다가 기독교에서 각 교단·교파별로 안락사나 연명치료에 대해 공식적인 합의가 이루어진 경우가 거의 없는 것은 큰 아쉬움이다. 그렇다고 누구에게나 언제 닥칠지 모르는 안락사나 연명치료의 문제에 대한 구체적인 대책이 없다면 또 다른 문제들이 파생될 가능성을 배제 할 수 없다는 점에서 더욱 우려스러운 부분이다.

따라서 신앙적 관점을 근거로 인간생명의 존엄성과 가치가 훼손되지 않으면서도 동시에 임종환자의 가족들의 형편, 각 상황을 충분히 고려한 구체적인 대책과 대안을 내놔야 한다. 더 나아가 신앙적 관점 하에서 생명윤리를 연구하는 학자들이 안락사와 연명치료 등에 대한 구체적인 대안을 연구하고, 기독교 공동체 뿐만 아니라 사회적 합의를 이끌어낼 만한 실효성 있는 대책을 세워야 할 것으로 보인다. 가령, 호스피스·완화의료 제도의 현실성 있는 정비, 국가적인 지원 대책 마련,¹³¹⁾ 호스피스·완화의료 전문요원

129) 후크마(A. A. Hoekema), 유후준 역, 『개혁주의 종말론』, 서울: 기독교문서선교회, 1986, 119면.

130) 서철원,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해설』, 서울: 쿰란출판사, 2019, 255면.

131) medifonews, “아직 갈길 면 허스피스·완화의료”, 2022. 7. 4,

<https://www.medifonews.com/mobile/article.html?no=168071>, 2023. 2. 24. 최종 검색.

양성을 위한 기독교계의 교육 확산 및 재정 지원 대책 마련, 말기 환자와 가족들에 대한 기독교계의 경제적 지원 및 임종을 위한 보편적인 제도 마련, 의학계의 말기 환자 관리지침 마련 등의 대책이 시급하다고 본다.

VI. 결론 및 제안

지금까지 기독교 신앙과 실정법에서 낙태와 안락사의 문제를 검토하였다. 낙태와 관련해서는 ‘생명의 시작’에 대한 신앙적·실정법적 논의”를 통해 정자와 난자가 수정되는 순간 생명이 시작된다는 사실을 확인했다. 곧 태아도 사람임으로 그 부모의 생명처럼 보호받아야 한다는 점을 확증했다. 이같은 연구 결과에 따라 본고가 지향하는 입장은 낙태를 받아들일 수 없으며, 동시에 사람이 생명인 것처럼 태아도 생명임으로 보호받아야 한다는 것을 확인하였다. 뿐만 아니라 낙태와 안락사에 대한 실정법적 고찰을 통해서 생명의 가치와 고귀함과 헌법상 보호법적으로 인정받아온 인간의 존엄성을 재확인하였다. 더 나아가 기독교 신앙적 관점에서는 하나님으로부터 모든 창조물의 면류관으로 지음받은 인간 생명의 소중함도 재확인하였다. 이같은 연구 결과에 의해 다음과 같은 몇 가지 결론을 정리해 본다.

첫째, 기독교 신앙과 실정법의 관점에서 볼 때 낙태는 범죄의 구성 요소를 지닌 죄다. 본고의 논증을 통해 생명을 해하는 낙태는 헌법불합치 결정과는 무관하게 죄라는 결론은 변함없는 사실이다. 둘째, 태아는 수정되는 순간 생명임으로 산모의 생명처럼 보호받아야 한다. 물론 산모의 선택권과 자기 결정권 역시 보호받아야 할 법적 권리이다. 하지만 산모의 선택권과 자기 결정권을 허용하는 문제를 태아의 생명은 비교 형량에 있어서 비할 수 없는 차원이라고 말할 수 있다. 셋째, 생명윤리의 차원에서 낙태로 인한 폐해¹³²⁾를 줄이는 대책이 시급하다. 낙태에 대한 헌법불합치 결정 후에 예상되는 폐해는 사회의 기반을 흔들만한 사안이다. 따라서 낙태로 인한 폐해를 방지하거나 줄이기 위해 생명윤리 차원의 대책이 시급하다. 넷째, 신앙적·실정법적 관점을 근거로 인간생명의 존엄성과 가치가 훼손되지 않으면서도 환자의 가족들의 형편을 충분히 고려한 구체적인 대책과 대안이 절실하다. 이와같은 결론에 바탕으로 다음 몇 가지를 제안하고자 한다.

1. 낙태에 대한 대체 입법이 속히 나와야 한다.

낙태 문제를 두고 일어난 찬반 논란의 불은 헌법재판소의 헌법불합치 결정 이후에도 쉽게 사그라들지 않을 전망이다. 그런 현실 가운데서 우리나라는 낙태죄를 규정하는 법률을 제정하여 낙태를 금지해 왔으나 그 법은 거의 사문화되어 버린 실정이다. 거기에다

132) 2021년 월드미터(전 세계 인구나 기타 지표 등을 실시간으로 추적하는 데이터베이스)의 발표에 따르면, 낙태가 2년 연속 전 세계 사망 원인 1위를 기록했다. “낙태로 죽어가는 생명들”, 기도24:365, 2022. 4. 1., 2022. 10. 5. 최종 검색.

<http://prayer24365.org/%EC%A0%80%EC%9E%A5%EC%86%8C/5958>

2021년 1월 1일부터 임신 중절이 기간이나 이유 등의 제한 없이 전면 합법화됨으로서 대체 입법이 마련되지 못하여 지금은 입법 공백 상태가 되어 혼란은 더욱 가중될 것 같다. 따라서 국민적 합의를 거친 대체 입법이 속히 나와야 한다. 그로 인해 낙태를 묵인하거나 방임·조장하는 사회적 분위기를 하루 속히 극복시켜서 낙태를 최소화시키는데 힘을 모아야 한다.

2. 낙태의 문제에 대한 접근 방식을 수정해야 한다.

사실상 이제는 낙태의 문제를 법적으로 접근하는 것은 거의 실효성이 없어 보인다. 헌법불일치 결정 이전에도 낙태죄로 인하여 기소되거나 처벌을 받는 경우는 극히 미미했는데, 하물며 낙태가 공식적으로 합법화된 마당에 낙태 문제를 접근하는 방법을 전면 폐기하지 않으면 천하보다 소중한 생명에 대한 경시 풍조가 만연해질 것은 뻔한 일이다. 그런 면에서 생명윤리적 관점에서 낙태 문제에 대한 접근 방식을 대폭 수정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가령, 낙태 사후 대책으로써 미혼모의 임신·출산 등에 대한 각종 정보 제공 및 주거·의료 지원을 위한 시스템 구축, 미혼모 상담과 돌봄을 위한 국가적인 대책, 미혼모 자녀 영유아 돌봄과 양육 시스템 마련, 미혼모와 자녀들에 대한 사회적 편견이나 차별의 개선책, 기독교계의 관심과 보호 및 지원책 마련, 미혼모 자녀 양육과 돌봄을 위한 배려와 지원 대책 등을 적극적이면서 신중하게 고려해야 한다.¹³³⁾

3. 생명의 존엄성과 고귀함을 확산시켜 나가야 한다.

생명이란 그 어떤 것보다 바꿀 수 없는 소중한 존재다. 생명은 재산이나 명예, 혹은 세상의 지위, 풍요로운 삶, 외모 등의 가치와 비교할 수 없을 만큼 존엄하고 고귀하다. 생명은 비록 태아일지라도 헌법적 보호를 받으며,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모습으로 지음 받은 고귀한 존재다. 더욱이 생물학적으로나 유전학적으로 태아도 생명체임이 입증되었음으로 태아의 생명은 반드시 보호받아야 한다. 특히 태아는 수정된 순간 그 부모와 다른 새로운 생명체로서의 고유한 정체성을 가진다. 더 나아가 성경의 각종 중언들을 통해서 태종에서 뛰놀던 태아가 이미 인격체로 인정을 받았다. 그렇기 때문에 부모라고 해서 그 태아의 생명을 박탈하거나 살해할 권리가 없다. 그토록 귀중한 생명의 가치와 존엄성을 지속적으로 확산시켜야 한다.

4. 안락사는 생명의 존엄성과 가치를 축으로 삼아 접근할 필요가 있다.

인간의 생명은 한번 잃으면 영원히 회복할 수 없는 절대적 가치이며, 인간존엄의 근원이다. 인간생명의 존엄성은 헌법상 존중받아야 할 최고의 가치이며, 가장 우선적으로

133) 미혼모 돌봄과 가족의 출산·양육 및 정책에 대해서는 <변수정 외 5인, 『미혼모가족의 출산 및 양육 특성과 정책과제』, 한국보건사회연구원(2019), 1-535면>, <임성은, “영국과 미국의 한부모가족 현황 및 지원정책”, 「국제보건복지 정책동향」, 보건복지포럼(2010), 83-103면>을 참고하라.

보호받아야 할 법익이다. 안락사는 사실상 인간생명의 존엄성을 침해해 왔으며, 생명권도 심각하게 훼손당해 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안락사에 대한 양측의 주장이 팽팽하여 평행선을 걷고 있다. 이런 즈음에 인간생명의 존엄성을 축으로 삼아 안락사의 문제를 접근하되, 조화와 균형을 갖춘 새로운 대안이 나와야 할 것 같다. 예컨대, 가족 구성원들의 인식 개선과 사회적 합의를 거친 균형 잡힌 안이 나오기를 기대해 본다.

5. 생명에 대한 심충적인 연구가 지속되어야 한다.

인간 생명의 기원 및 생명권, 그리고 생명의 시작 등의 주제들은 너무 방대하고, 접근 방식도 다양하다. 그에 비해 본고에서 고찰한 위 주제들은 마치 한강 모래밭에서 채취한 모래 한 알처럼 극히 작은 한 분야에 불과했다는 것이 본 연구의 한계였다. 따라서 인간의 생명에 대한 연구 방법은 신앙적·실정법적인 접근 뿐만 아니라 의학적, 생물학적, 발생학적, 유전학적 법철학적 등 다방면에서 심충적인 연구가 지속되어야 한다. 그런 연구 결과로 나온 생명의 고귀함과 소중함을 도출해 낸 후 다양한 방법들¹³⁴⁾과 매체들¹³⁵⁾을 이용하여 지속적이고 꾸준히 사회 전반에 확산시켜 나가야 한다.

6. 책임있는 생명윤리 인식과 확산이 절실하다.

인간은 사회적 존재다. 그런 전제 하에서 보면 인간은 혼자 힘으로 생존할 수 없으며, 자기 완성도 이를 수 없다. 그렇기 때문에 인간은 공동체 속에서 상호 의존하면서 행복한 가정과 사회를 함께 일궈나가야 한다. 그 과정에서 사회 구성원들에게 절대적으로 필요한 것은 책임있는 윤리의식이다. 이미 우리 사회 문제로 부각된 이혼, 자살, 저출산, 노인, 낙태, 안락사 등의 문제는 심각한 상태다. 특히 낙태에 대한 현법불합치 결정이나 연명의료결정법 제정 등의 영향으로 인해 생명경시 풍조가 확산될 우려도 크다. 이같은 사회 문제들에 대해 각계 각층에서 책임있는 생명윤리를 인식하고 확산시키는 일에 앞장 서야 할 것 같다.

주제어: 낙태(abortion), 안락사(euthanasia), 낙태죄(crime of abortion), 연명치료(life-sustaining treatment), 인간 생명의 시작(beginning of human life), 인간 생명의 존

134) 구체적인 방안을 제안해 보면, ①홍보와 계몽운동: △낙태를 반대하는 기독교계의 각 교단 교파별로 <생명살리기운동본부> 혹은 <낙태반대캠페인본부> 등을 상설기구(교단별 종회 소속의 장기적인 기구)를 설치하여 지속적으로 생명의 중요성을 홍보하고, △낙태의 폐해를 알리며, △‘낙태는 생명을 살해하는 행위’라는 것을 계몽하는 일과, ②생명윤리 차원에서 전국의 각 신학대학에서 생명윤리학과를 신설하여 △낙태문제, △생태계보호 문제, △기후문제 등의 전문가 배출에 힘써야 할 것과, ③생명을 살리는 일과 낙태를 반대하는 견해를 갖고 있는 기독교 외 각 종교단체 및 사회단체들이 연대하여 △범국민적인 운동의 차원에서 생명윤리 방송 채널 운영, △혹은 생명을 살리는 전문방송 채널을 만들어 지속적으로 홍보하는 방안 등이 있겠다.

135) 예컨대, 종교계나 학계의 세미나, 심포지움 혹은 언론 보도나 유튜브 방송 등을 통해 낙태 반대운동을 지속적으로 확산시켜 나가고, 낙태를 반대하는 사회단체들이 서로 연대하여 국가적인 지원 대책을 모색하고, 더 나아가 생명윤리를 실현하기 위한 국가적 기구 설립을 위한 시도 등을 고려해 볼만하다.

엄성(dignity of human life), 인간의 죽음(human death)

투고일자 2023. 01. 28. 심사개시일자 2023. 02. 13. 게재확정일자 2023. 02. 21.

■ 참고문헌

단행본

- 권영성, 『헌법학원론』, 서울: 법문사, 2011.
- 김건열, 『존엄사』, 서울: 최신의학사, 2005.
- 김상득, 『생명의료 윤리학』, 서울: 철학과현실사, 2000.
- 김선복, 『신형법각론』, 서울: 세종출판사, 2016.
- 김성돈, 『형법각론』, 서울: 성균관대학교출판부(SKKUP), 2021.
- 김일수·서보학, 『새로쓴 형법각론』, 서울: 박영사, 2018.
- 김은수, 『칼빈과 개혁신앙』, 서울: SFC, 2011.
- 김철수, 「인간의 권리」, 서울: 산지니, 2021.
- 김학성·최희수, 『헌법학원론』, 서울: 피앤씨미디어, 2022.
- 계희열, 『헌법학(중)』, 서울: 박영사, 2002.
- 문국진, 『생명윤리와 안락사』, 서울: 여문각, 1999.
- 박상기, 『형법각론』, 서울: 박영사, 2011.
- 박찬결, 『형법각론』, 서울: 박영사, 2022.
- 배종대, 『형법각론』, 서울: 홍문사, 2021.
- 서철원, 『하이텔베르크 요리문답해설』, 서울: 큐란출판사, 2019
- 성낙인, 『헌법학』, 서울: 법문사, 2022.
- 임종식, 『낙태 논쟁』, 서울: 성균관대출판부, 2019.
- 오영근, 『형법각론』, 서울: 박영사, 2022.
- 이재상, 『형법각론』, 서울: 박영사, 2013.
- 이준일, 『인권법, 사회적 이슈와 인권』, 서울: 홍문사, 2021.
- , 『헌법학강의』, 서울: 홍문사, 2019.
- , 『13가지 죽음 어느 법학자의 죽음에 관한 사유』, 서울: 지식프레임, 2008.
- 장영수, 『헌법학』, 서울: 홍문사, 2021.
- 정성민·박광민, 『형법각론』, 서울: 삼영사, 2011.
- 정영일, 『형법각론』, 서울: 도서출판 학림, 2022.
- 정종섭, 『헌법과 기본권』, 서울: 박영사, 2010.
- 최경석, 『인간 생명의 시작은 어디인가』, 서울: 북디자인 투피피, 2009.
- 성낙인, 『헌법학』, 서울: 법문사, 2022.
- 한수웅, 『헌법학』, 서울: 법문사, 2021.
- 허영, 『한국헌법론』, 서울: 박영사, 2022.

번역서

별코프, 권수경 · 이상원 역, 『조직신학』, 서울: 크리스챤다이제스트, 1991.

별코프, 고영민 역, 『별콥 조직신학 제 3 권 인간론』, 서울: 기독교문사, 1978.

피터 싱어, 구역모 엮음, 『인간의 생명은 언제 시작되는가』, 생명의료윤리, 1999.

Rae, S.B. & P.M. Cox., 김상득 역, 『Bioethics: A Christian Approach in a Pluralistic Age』, Cambridge: Wm B.Eerdmans Publishing Co., 서울: 살림, 1999.

칼빈, 문병호 역, 『기독교 강요2』, 서울: 생명의말씀사, 2020.

후크마(A. A. Hoekema), 유호준 역, 『개혁주의 종말론』, 서울: 기독교문서선교회, 1986

외국서적

Congregation for the Doctrine of the Faith, Declaration on Procured Abortion, Vatican City: Vatican Polyglot Press, 1974.

Douglas, J. D. (organizing editor), New Bible dictionary (Second Edition). Leicester, Inter-Varsity Press, 1982.

John Jefferson Davis, 「Evangelical Ethics: Issues Facing the Church Today」 Phillipsburg, New Jersey: Presbyterian and Reformed Publishing Co., 1985.

Millard J. Erickson, 「Christian Theology」, Grand Rapids, Michigan: Baker Book House, 1985.

O'Mathuna, D. P., "The God?", 「Bioethics and the Future of Medicine」, 1995.

Werner Heun, Embryonenforschung und Verfassung - Lebensrecht und Menschenwürde des Embryos, JZ 2002.

논문

고봉진, “태아의 헌법상 지위”. 「법과 정책」 제22집 제1호, 2016.

구인회, “인간 배아의 정체성과 생명권”, 「인간연구」 제26호, 2014.

김동건, “안락사에 대한 신학적 고찰”, 「기독교사상」 제571호, 2006.

김상득, “인간생명의 시작에 관한 성경적 이해 -생명윤리 물음에 관한 실천적 함의를 중심으로-”, 「신앙과 학문」 제15권 4호, 2010.

김은애, “출생 전 생명에 대한 헌법적 고찰 -태아 및 배아의 생명권과 그 제한을 중심으로-”, 「의료법학」 제10권 제1호, 2009.

김일수, “법학의 관점에서 본 인간생명의 존엄성”, 2022.5.14. 가톨릭생명윤리연구소 20주년 학술대회 발표.

-----, “인간 복제의 윤리적 · 법적 문제”, 「법조」, 1999.

-----, “안락사 문제의 실정법적 연구”, 「현대사회」 현대사회연구소, 1984.

김선택, “출생 전 인간생명의 헌법적 보호”, 「헌법논총」 제16집, 2005.

김종세, “태아의 생명권에 관한 소고 -헌법재판소 2008. 7. 31., 2004 현바

- 81-” , 「법학연구」 제40집, 2010.
- 김태계, “낙태죄에 대한 문제점과 입법론” , 「법학연구」 제18권 제1호, 2010.
- 김학성, “생명을 둘러싼 헌법적 문제(상) -특히 생명권의 주체와 시기를 중심으로-” , 「강원법학」 제43권, 2014.
- 류병운, “인간복제를 규제하는 국제규범” , 「홍익법학」 제15권 제1호, 2014.
- 박선영, “인간의 존엄과 가치, 그리고 배아” , 「현법학연구」 제16집, 2007.
- 방승주, “배아와 인간존엄” , 「법학논총」 제25집 제2호, 2008.
- , “착상전 진단의 헌법적 문제, 「현법학연구」 제16권 제4호, 2010.
- 백수원, “죽음, 안락사, 생애마무리에 관한 헌법적 논의 - ‘생애마무리 지원 법안’에 관한 내용을 중심으로-” , 「미국현법연구」 제30권 제3호, 2019.
- 서경, “착상 전 배아의 도덕적 지위” , 「Korean Journal of Obstetrics and Gynecology」 제51권 제3호, 2008.
- 손명세·유호정·이경환, “인간의 시점에 대한 우리 법의 입장 고찰” , 「한독법학」 2002.
- 이동익, “가톨릭 윤리신학의 안락사 이해와 불필요한 치료행위에 관한 고찰” , 「신학과 사상」 제35집, 2001.
- 이상원, “인간배아의 지위에 관한 연구” , 「신학지남」 제316호, 2013.
- 이승구, “생명의 기원에 대한 신학적 논의” 강의안.
- 임성은, “영국과 미국의 한부모가족 현황 및 지원정책” , 「국제보건복지 정책 동향」 , 보건복지포럼, 2010.
- 우재명, “「생명윤리및안전에관한법률」에 대한 가톨릭생명윤리적 고찰” , 「신학과 철학」 제8호, 2006.
- 유경동, “생명개념과 생명윤리에 관한 법과 기독교의 입장 비교연구” , 「장신논단」 제47권 제1호, 2015.
- 유지홍, “태아의 권리능력 재논의 필요성에 대한 제언(提言)” , 「한국의료윤리학회지」 제17권 제1호, 2014.
- 윤성혜, “‘배아가 인간인가?’에 관한 논쟁 연구” , 「인간연구」 제47호, 2022.
- 윤영호, “품위있는 죽음(존엄사)을 위한 법적 제도적 장치 마련” , 「의료와 법」 제6권 제3호, 2008.
- 정문식, “배아줄기세포연구시 배아의 생명권과 인간존엄” , 「한양법학」 제18집, 2005.
- 정화성, “생명윤리문화에 있어서 낙태에 대한 소고” , 「문화 미디어 먼트법」 제12권 제2호 2018.
- 장화선, “생명개념의 전수를 위한 기독교교육” , 「기독교교육논총」 제36집, 2013.
- 조한상, “안락사에 관한 헌법학적 고찰” , 「동아법학」 제53호, 2011.

- 최경석, “출생 전 생명윤리에 대한 생명윤리적 고찰”, 「의료법학」 제10권 제1호, 2009.
- , “인간 배아연구의 도덕성 논란과 인간 생명의 시작”, 「한국의료윤리지」 제8권 제1호, 2005. 교육학회
- 최태영, “죽음에 대한 신학적 고찰”, 「신학과목회」 제32집, 2009.
- 허순철, “현법상 연명치료 중단 - 대법원 2009. 5. 21. 선고 2009다17417 판결의 의의를 중심으로-”, 「공법학연구」 제11권 제1호, 2010. 17417 판결
- 홍순원, “안락사와 존엄사 -목회상담을 위한 메타윤리적 연구-”, 「신학과 실천」 제51호, 2016.

대법원

- 대법원 1982. 2. 9. 선고 81다534판결.
- 대법원 1985. 6. 11. 선고 84도1958 판결.
- 대법원 2004. 6. 24. 선고 2002도995 판결.
- 대법원 2005. 4. 15. 선고 2003도2780 판결.
- 대법원 2009. 5. 21. 선고 2009다17417 전원합의체 판결.

헌법재판소

- 헌법재판소 1990. 9. 10. 선고 89헌마82 결정.
- 헌법재판소 1991. 4. 1. 선고 89헌마160 결정.
- 헌법재판소 1996. 11. 28. 선고 95헌바1 결정.
- 헌법재판소 2002. 7. 18. 선고 2000헌마327 결정.
- 헌법재판소 2005. 5. 26. 선고 99헌마513 결정.
- 헌법재판소 2007. 5. 31. 선고 2005헌마1139 결정.
- 헌법재판소 2008. 7. 31. 선고 2004헌바81 결정.
- 헌법재판소 2010. 5. 27. 선고 2005헌마346 결정.
- 헌법재판소 2012. 8. 23. 선고 2010헌바402 결정.
- 헌법재판소 2019. 4. 11. 선고 2017헌바127 헌법불합치 결정.

신문 기사

- 프레시안, <https://www.pressian.com/pages/articles/2022092713574355237>.
- 청년의사, 생명윤리에 대한 국내외 논쟁” ,
<http://www.docdocdoc.co.kr/news/articleView.html?idxno=30661>.
- 한국일보, <https://www.hankooki1bo.com/News/Read/A2020102714140001768>.

인터넷 자료

기독교대한감리회 총회 홈페이지, <https://kmc.or.kr/combination-resources>.

기독교대한성결교회 총회 홈페이지, <http://www.kehc.org/home/constitu>.

기독교대한하나님의성회 총회 홈페이지,

http://www.agk.or.kr/bbs/content.php?co_id=sub103.

기독교장로회 총회 홈페이지, http://www.prok.org-gnu/s1_6.htm.

기독교장로회 총회 홈페이지, http://www.prok.org-gnu/s1_7.htm.

나무위키, ‘암수범죄’

<https://namu.wiki/w/%EC%95%94%EC%88%98%EB%B2%94%EC%A3%84>.

낙태로 죽어가는 생명들, 기도24 · 365,

<http://prayer24365.org/%EC%A0%80%EC%9E%A5%EC%80%8C/5958>.

위키백과, 인공임신중절,

<https://ko.wikipedia.org/wiki/%EC%9D%88%EB%91%EC%84%EC%8B%A0%EC%A4%91%EC%A0%88>.

예장통합 홈페이지, <http://www.pck.or.kr/law.php?sca=%EC%A0%9C1%ED%8E%B8>.

예장합동 홈페이지, http://gapck.org/sub_06/sub01_01.asp.

한국보건사회연구원, <https://www.kihasa.re.kr/news/press/view?seq=47320>.

한국생명존중희망재단, 한국자살현황

<https://kfsp-datazoom.org/korea04.do>.

기타자료

「UN 인간복제에 관한 선언」.

「EU 인권과 생명의학에 관한 협약」.

■ 초록 “기독교 신앙과 실정법에서 본 낙태와 안락사”

한국 생명존중희망재단에서 발표한 통계에 따르면, 2022년 1월부터 8월까지 8,426명이 자살했다. 지난 2021년 한 해 동안 13,352명이 목숨을 끊었다. 통계청은 2021년 한국의 자살률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중 1위며, 30대까지의 사망 원인 1위가 자살이라고 발표했다. 이미 알려진 사실이지만 막상 통계를 접하고 보니 충격적이다. 지난 해 8월에 1046명이 스스로 생명을 끊었다는 것은 우리 사회에서 벌어지고 있는 생명 경시 풍조를 보여주는 단면이다.

인간의 생명이 그렇게 자살로 마감해야 할만큼 가볍고 하찮은 존재일까? 그렇다면 우리 사회가 OECD국가 중 자살률 1위라는 불명예스러운 통계를 줄여 보려는 특단의 대책을 마련할 수 없을까? 인간 생명의 가치를 가장 소중히 여기고 있는 기독교라도 우리 사회에 그처럼 만연된 생명경시 풍조에 역류·역행하는 패러다임을 기반으로 한 구체적인 대안을 내놓을 수 없을까? 이같은 물음에 대해 기독교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은 바된 인간의 존엄성과 고귀한 생명의 가치를 제대로 가르쳐야 할 의무를 다하지 못하고, 사회 전반에 확산시켜야 할 책임을 감당하지 못한데 대한 반성적 성찰이 절실해 진다.

우리 사회가 직면한 생명과 관련한 문제는 자살에 대한 절망적인 통계만이 아니다. 생명윤리의 쟁점인 낙태와 안락사 역시 천하보다 귀한 인간 생명의 존엄성과 가치를 치명적으로 해(害)하는 주제들이다. 과학 기술의 진보는 스스로 자체력을 통제하는 자율성을 잃은 채 무제한적으로 연구 분야 및 그 범위를 확산해 가고 있다. 현대 생명과학의 주제들이 그 단면을 보여주고 있다. 예컨대, 배아 복제, 유전자 조작 및 치료, 연명 치료, 인간대상 및 인체 유래물 연구, 장기이식 놔사 등이 그 사례들이다.

이 같은 생명 윤리의 쟁점들 중 낙태의 경우 헌법재판소가 「형법 제269조 제1항 등 위헌소원」에서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림으로써 낙태죄가 폐지되어 2020년 한 해 동안 인공임신중절 건수가 32,063건으로 집계되었다. 이 같은 공식 통계 외에도 우리 사회에서 광범위하고도 은밀하게 시행된 암수 범죄까지 포함하면 낙태로 인한 태아의 살해는 그보다 훨씬 많을 것으로 추정된다. 안락사의 경우도 「연명의료결정법」에 근거하여 환자의 연명의료결정제도를 시행하고 있어 사회적 논란이 이어지고 있다.

이처럼 낙태와 안락사의 문제는 현대 사회에서 더 이상 피해갈 수 없는 주요 이슈 중의 하나다. 이 두 쟁점은 삶의 죽음의 문제로써 모든 사람들에게 필연적인 과제이며, 동시에 인간 생명의 존엄성과 가치에 관련된 주제들이다. 특히 두 쟁점들은 윤리적인 측면이나 종교적인 면, 더 나아가 사회적인 합의를 도출해야 할 과제도 안고 있다.

위와 같은 사회 현실을 고려하면서 본고는 기독교 신앙과 실정법의 차원에서 낙태와 안락사의 문제를 검토하였다. 그 결과 신앙적·실정법적 관점에서 볼 때 낙태는 범죄의 구성 요소를 지닌 죄라는 점, 태아는 수정되는 순간 생명임으로 산모의 생명처럼 보호 받아야 한다는 점, 생명윤리의 차원에서 낙태로 인한 폐해를 줄이는 대책이 시급하다는 점, 신앙적·실정법적 관점을 근거로 인간생명의 존엄성과 가치를 훼손하지 않으면서도 환자의 가족들의 형편을 충분히 고려한 구체적인 대책과 대안이 절실하다는 점 등의 결

론에 이르게 되었다.

[ABSTRACT]

Abortion and Euthanasia from the Perspectives of Christianity and Positive Law

Sam
Yong Song

According to statistics released by Korea Foundation for Suicide Prevention, 8,426 people committed suicide from January to August 2022. In 2021, 13,352 people ended their lives. The National Statistics Office in Korea announced that in 2021 South Korea had the highest suicide rate among member countries of the Organisation for Economic Co-operation and Development (OECD), and the most common cause of death for people below age 30 was suicide. While this is a well-known fact, the actual statistics are distressing.¹³⁶⁾ The fact that 1,046 people took their own lives in August of last year demonstrates the trend toward disregarding life.

Is human life so insignificant and trivial that it is so easy to end it by suicide? Then would it not be possible to prepare special measures to displace Korea from its depressing rank as the country with the highest number of suicides in the OECD? Would not Christianity, which values human life above all else, be able to offer concrete measures based on a paradigm that counters and reverses the widespread trend of disregarding life prevalent in Korean society? Regarding this question, it could be argued that Christianity has not been able to fulfill its duty of properly teaching about the dignity of human beings who were created in the image of God and the value of a noble life, and has not managed to fulfill its responsibility of spreading its message to society as a whole, and therefore reflective contemplation is necessary.

The life-related issues that Korean society is facing are not limited to suicide. Abortion and euthanasia, which are bioethical disputes, are also topics that critically damage both the value and dignity of human life that is more valuable than anything. The advancement of science and technology is relentless, as the autonomy that regulated self-control has been lost. The topics of the modern life sciences reveal this dimension. For instance, these include cases such as embryonic cloning, genetic manipulation and gene therapy, life-prolonging

* Kwangshin University(Adjunct Professor), Korea University(Ph. D. in Law in course), Bristol University(Trinity College, M.A. in Theological Studies), A publisher of the Church Law Newspaper.

treatment, and research on human subjects and human-derived materials, as well as organ transplantation and brain death.

Among such bioethics issues, in “Article 269, Paragraph 1 of the Criminal Act” concerning abortion, the constitutional court ruled on the issue of constitutional nonconformity, and following decriminalization, cases of induced abortion reached 32,063 in 2020. If we include the hidden crimes that are widespread in Korean society, it can be estimated that the number of fetal deaths due to abortion is much higher.

Regarding euthanasia, a life-sustaining treatment decision system is implemented based on the Life-sustaining Treatment Act, and this has faced criticism. The problems of abortion and euthanasia are unavoidable issues of modern society. As matters of life and death, these two issues represent an obligation for everyone and are subjects related to both the value and dignity of human life. In particular, the two issues have ethical or religious aspects, and also involve the task of reaching a social consensus.

By considering such social realities, this article investigated the issues of abortion and euthanasia from the perspectives of Christianity and positive law. As a result, abortion can be considered as a component of crime from a spirituality and positive law point of view, and an embryo can be regarded as a living being from the moment conception occurs, and should be protected as a living human being. In addition, from a bioethical point of view, measures to reduce the harmful effects of abortion should be taken promptly. From the perspectives of spirituality and positive law, measures and solutions that consider the circumstances of patients' families without damaging the dignity and value of human life are urgently needed.